

2011 기획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시리즈4

[계획기부 연구]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아름다운재단기부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 고령화 사회와 계획기부

2011.11.

## 연구 목 차

### I. 고령화 사회와 계획기부

- 공동집필

### II.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계획기부 상품

-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

### III. 고령화 시대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법적인 검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이상신 교수

# I. 고령화 사회와 계획기부

##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인간의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재털-리스-슈스미스(2006)<sup>1)</sup>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는 소비자의 경제활동참여 기간의 증가와 고령인구시장이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등장으로 또 다른 마케팅 기회<sup>2)</sup>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부담하고 부양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는 고령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NIA)를 두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연구와 고령화를 대비한 사회적인 준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sup>3)</sup>.

허드와 로웨더(2010)의 연구<sup>4)</sup>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주요 소비구성(composition of consumption)은 주거(housing), 건강(health), 음식(food), 교통비(transportation), 증여 및 기부(gift and donation), 전기-수도(utilities), 의복(clothing), 그리고 여가(leisure)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은 50대를 전후로 해서 높아져서 독신 기준(for singles)으로 전체소비의 7%가 되며, 계속 증가하여 90대가 되면 19%가 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이상~14%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20%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년)에 따르면, 2009년(7월 1일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10년 전(1999

1) Jarrell, Sherry, Garst Reese and Gary L. Shoesmith (2006), "What Will U.S. Consumer Spending Pattern Look Like in 2020 and 2025?"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Spring.에서 고령인구의 특성에 대해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한다.
  - ② 자가용에 의존하지만 택시나 대중교통을 선호한다.
  - ③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건강관리에 지출한다.
  - ④ 텔레비전이 중요한 생활패턴이 된다.
  - ⑤ 가능하면 자신의 집을 유지하려고 하고 양로원이나 요양소를 피하려고 한다.
  - 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
  - ⑦ 시민운동에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 ⑧ 주거비 및 관리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 ⑨ 옷이나 화장품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 2) 이러한 관점에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등장이나 실버마케팅(silver marketing)을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소비자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 3) <http://www.nia.nih.gov/>
- 4) Hurd, Michael D. and Susanna Rohwedder (2010), "Spending Patterns of the Older Population," 『The Aging Consumer』, Routledge, p.25~49

년) 6.9%에 비해 3.8%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인구구조, 성비 및 평균연령<sup>5)</sup>

인구구조, 부양비별	2046	2047	2048	2049	2050
총인구 (명)	44,111,099	43,687,610	43,251,164	42,802,545	42,342,769
남자 (명)	21,647,399	21,425,695	21,199,278	20,968,600	20,734,181
여자 (명)	22,463,700	22,261,915	22,051,886	21,833,945	21,608,588
성비 (여자백명당남자수)	96.4	96.2	96.1	96.0	96.0
인구성장률 (%)	-0.92	-0.96	-1.00	-1.04	-1.07
0-14세 (명)	4,115,887	4,017,409	3,925,525	3,840,716	3,763,081
15-64세 (명)	24,038,812	23,582,585	23,158,632	22,775,339	22,423,931
65세 이상 (명)	15,956,400	16,087,616	16,167,007	16,186,490	16,155,757
인구구성비:0-14세 (%)	9.3	9.2	9.1	9.0	8.9
인구구성비:15-64세 (%)	54.5	54.0	53.5	53.2	53.0
인구구성비:65세 이상 (%)	36.2	36.8	37.4	37.8	38.2
총부양비	83.5	85.3	86.8	87.9	88.8
유소년부양비	17.1	17.0	17.0	16.9	16.8
노년부양비	66.4	68.2	69.8	71.1	72.0
노령화지수	387.7	400.4	411.8	421.4	429.3
중위연령 (세)	55.3	55.7	56.0	56.4	56.7
중위연령-남자 (세)	53.4	53.8	54.2	54.5	54.9
중위연령-여자 (세)	57.7	57.9	58.2	58.5	58.8
평균연령 (세)	52.4	52.6	52.9	53.1	53.4
평균연령-남자 (세)	50.7	51.0	51.2	51.4	51.7
평균연령-여자 (세)	54.0	54.3	54.5	54.8	55.0

## 2. 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담증가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특성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표1>에서 보듯이 2050년까지 인구성장률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15세~64세 인구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부근이 된다. 따라서, 인구성장률의 감소로 인해 사회가 감당해야할 유소년 부양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노년부양비율<sup>6)</sup>은 점차 높아져서 2050년에는 72에 이른다. 이는 생산가능한 인구 100명이 72명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함을 말한다.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평균연령(전국)』

6) 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text{세에서}64\text{세 인구}} \times 100$

<표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sup>7)</sup>

(단위: 백명당)

년도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sup>1)</sup>	노령화지수 <sup>2)</sup>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sup>3)</sup>
2011	36.8	15.5	72.4	6.5
2012	36.5	16.0	77.6	6.3
2013	36.4	16.5	83.2	6.0
2014	36.4	17.1	88.9	5.8
2015	36.3	17.6	94.8	5.7
2016	36.3	18.2	100.7	5.5
2017	36.6	18.9	106.6	5.3
2018	37.1	19.7	112.5	5.1
2019	37.9	20.6	119.0	4.9
2020	38.9	21.7	125.9	4.6
2021	40.1	22.9	133.3	4.4
2022	41.4	24.3	141.5	4.1
2023	42.9	25.8	150.2	3.9
2024	44.5	27.4	159.5	3.7
2025	46.3	29.1	169.1	3.4
2026	48.2	30.9	178.6	3.2
2027	50.0	32.6	187.9	3.1
2028	51.8	34.4	196.9	2.9
2029	53.6	36.1	205.5	2.8
2030	55.4	37.7	213.8	2.7
2040	74.7	56.7	314.8	1.8
2050	88.8	72.0	429.3	1.4

주:1)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2)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

<표 2>의 2011년부터 2050년까지 중기적인 인구변화추세자료를 살펴보면 노년부양비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짐을 알 수가 있다. 2000년에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0명의 노령인구를 부양했는데, 20명을 부양하게 되는 시점은 2019년으로 20년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는 시점은 2026년으로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못지않게 노령화 속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사회가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 못지않게, 부담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를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는 高齡化社會에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진입했으며,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高齡社會에는 2019년에,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超高齡社會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6년에는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한다. 프랑스가 高齡化社會에서 高齡社會로 도달하는데 무려 115년, 高齡社會에서 超高齡社會로 진입하는데도 4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超高速 老化現像'이다.<sup>8)</sup> 이와 같이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 소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32%는 금융자산은 물론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노인들 중 생활비를 자녀 및 친척의 도움에 의존하는 비율이 37%라고 한다.<sup>9)</sup>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13.3%)의 3.4배가 넘는 45.1%라는 연구결과도 있다.<sup>10)</sup> 이처럼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측면에서도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의 변화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sup>11)</sup>

첫째, 個人的 次元에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老年期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이라는 개념 및 노후가 덩으로 사는 여생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둘째, 가족생활 주기상으로 자녀 출가 후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서 살아가는 시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경향까지 더해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를 가속화 시켜 전통적 노인부양체계, 즉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회전반에 걸친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대간 대립이 초래되고 있으며 세대간 사회적 욕구에 대한 협상과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8) 인터넷한겨레 2004.10.1.자

9) 이데일리 2010.10.26.자

10) 정창률, "연금체제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소득 보장 체계",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2호(2010.3), p.344

11) 전길양, 「노령화 사회와 개인주의 세대」, <http://woman21.org/view.php?id=free&no=2> ; 재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최준욱/전병목,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 16-17 참조.

## II.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계획기부 상품

- 오준석교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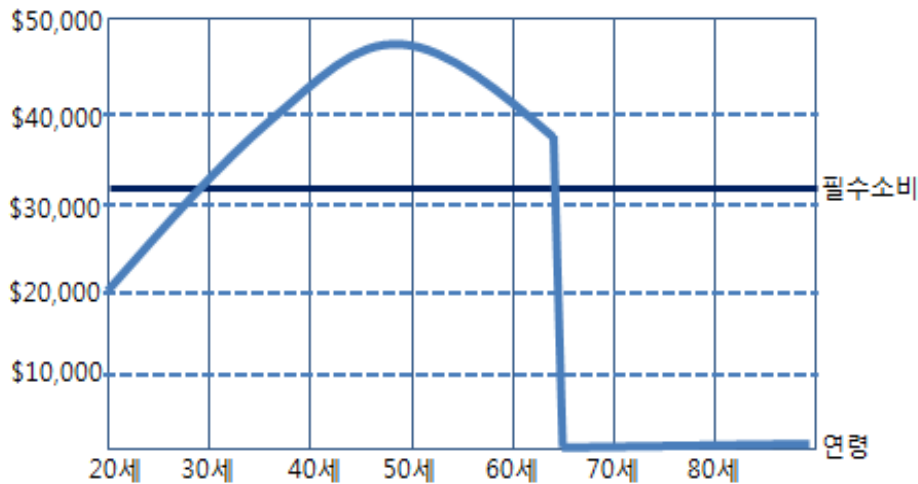
### 1.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에 따른 은퇴계획의 수립(retirement planning)

#### (1) 생애주기 모형에 따른 소득의 변화

루사디와 빌러(2007)의 연구<sup>12)</sup>에 따르면 은퇴 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룹(planners)과 그러한 계획이 없는 그룹(nonplanner)간의 은퇴 후를 위한 부의 축적성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결과, 계획이 없는 그룹(nonplanner)이 유의적으로 저축 등을 적게 함으로써 은퇴 후를 대비한 부의 축적(wealth accumulation)이 낮았다. 계획이 없는 그룹(nonplanner)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이었고, 고소득계층이 주로 계획이 있는 그룹(planners)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버틀리스(2006)는 실증연구<sup>13)</sup>를 토대로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하였는데 85세의 기대수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은퇴시점을 65세로 잡고 있으며, <그림1>과 같은 생애소득과 필수소비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그림 1> 생애주기모형에 따른 소득과 소비추이



12) Lusardi, A. and Beeler, J. (2007), "Explaining Savings Behavior Between Cohorts: The Role of Planning," 『Redefining Retirement :How Will Boomers Fare?』 Oxford University Press.

13) Burtless, Gary (2006), "Social Norms, Rules of Thumb, and Retirement: Evidence for Rationality in Retirement Planning," 『Social Structures, Aging, and Self-Regulation in the Elderly』, Springer, pp.123-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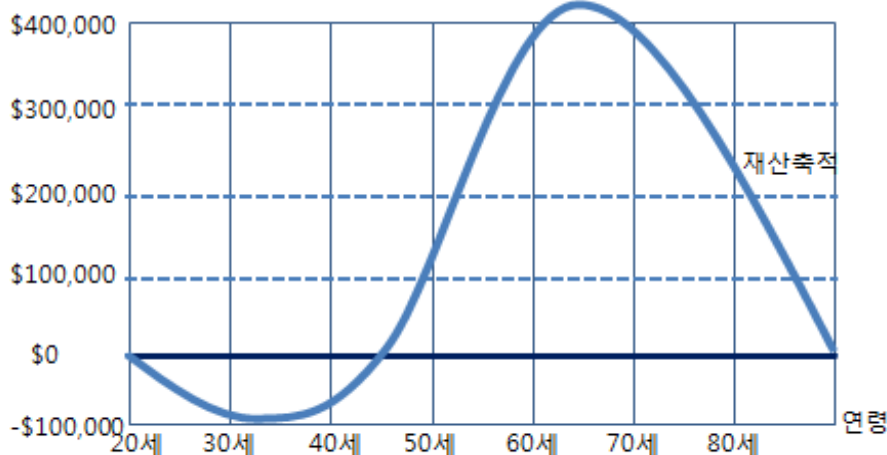


20세를 전후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20,000달러수준의 일을 하게 되고, 50세부근에서 근로소득은 46,000달러수준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수준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필수소비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기대수명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총액은 170만달러로서 미국의 평균저축률을 적용한다면 연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은퇴이전에 축적한 부를 가지고 생애기간동안 연간 30,000달러를 상회하는 필수소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은퇴계획하의 부의 축적형태

현재,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세<sup>14)</sup>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합하여 봉급의 12.4%를 지불하고 있는데, 연금이나 기타 노후보장계획<sup>15)</sup>에 드는 경우 그러한 노후계획을 세우지 않는 근로자들에 비해 12%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low wage)이 장기적인 은퇴계획을 세우고 연금 등에 드는 것이 유리하도록 수익률이 유리하게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소득계층이고 장기간 봉직한 근로자(high wage and long service workers)일수록 상대적으로 연금에서 얻는 수익률이 낮게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버틀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표본그룹에서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금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출하여 부의 축적행태를 분석하였더니, <그림 2>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림 2> 장기적인 은퇴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부의축적행태



14) 미국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와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가 있다.

15) 401(k) plan이나 펀드 및 각종 보장성보험 등을 말한다.

16) Burtless, Gary (2010), "Do Workers Prepare Rationally for Retirement? ," 『The Aging Consumer』 , Routledge, p.109

은퇴 후의 소비의 규모와 소득의 변화추이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장기적인 생애주기모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게 될 부의 변동에 대한 예측(projection)을 하게 된다. 사회진입초기의 학자금 대출 등의 부채를 안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거구입에 따른 부채를 평균 10만 달러정도까지 안게 된다. 이후 45세부터 65세까지 꾸준히 노후대비를 위한 부를 축적하여 은퇴시점에는 45만 달러를 상회하는 부를 확보하려고 한다. 45세부터 65세까지 기간이 부를 축적하는 기간이라면, 65세 이후에는 축적한 부를 소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은퇴계획을 통해 부의 소비에 있어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소비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소비를 위한 부를 준비하는 20년 동안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다.

### (3) 은퇴계획 수립의 의미

생애주기모형을 가지고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은퇴 후의 소비에 대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생산활동을 하는 시기에 은퇴계획(retirement plan)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은퇴계획수립의 의미



#### 1) 개인적 차원

먼저, 개인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은퇴이전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산활동이 약화되는 노후생활의 삶의 질(Quality of Life:QOL)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노력과 준비가 선행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한 자력구제가 사회적인 시스템의 지원과 결합될 때 사회복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적 차원

동시에, 은퇴계획의 수립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앞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은퇴계획 수립의 의미를 언급한 바 노후생활의 삶의 질(QOL)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사회 또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노령인구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요구되며, 세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보험의 부담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려는 동기(incentives to work)를 저해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 부담에 대한 공정성(fairness) 논의 없이 사회복지 또는 배분(ability to benefit)에 대한 공정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퓰리즘(populism)<sup>17)</sup>으로 성장 없이 책임전가만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으로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pay)이 증가되지 않는다.

## 3) 노후생활의 질(QOL)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인프라의 마련

사회적으로 은퇴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면,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단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방법과 효율성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소비 및 저축활동의 변화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일하려는 동기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 노후생활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QOL) 유지



17) “경제에는 공짜점심이 없다.”(there is no free lunch in economics)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사회복지이념을 내세운 파퓰리즘(populism)의 결과가 무엇인지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등 유럽의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후대에게 경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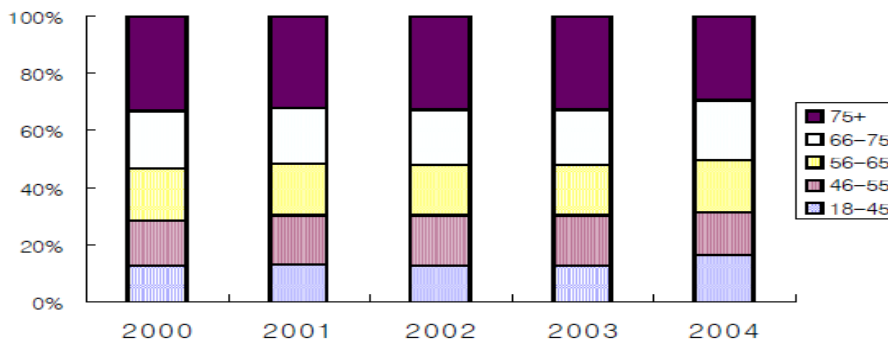
## 2. 또 다른 은퇴계획으로서의 계획기부(planned giving)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은 은퇴 후의 삶의 질(QOL)을 은퇴전보다 떨어뜨리지 않고, 더 나아가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ability to benefit)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담능력(individual ability to pay)과 사회적 부담능력(social ability to pay)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 및 방법이 사회인프라로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1) 노년 고액소득층(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의 등장

세계적인 유동성의 증가와 국제자본시장의 통합화는 자산가들이 국제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펀드 등에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노년까지도 운용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투자기회와 금융서비스가 많아졌다. 고액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말한다. 보험자료 전문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 Co.)에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연령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75세 이상이 고액자산가의 2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66세~75세 층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자산가의 50%가 노년 고액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 영국의 연령별 고액자산가 비중<sup>18)</sup>



### 1)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 ;WWR)

미국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Cap Gemini Ernst & Young)와 공동으로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0년 WWR(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세계 고소득자(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s)의 인구와 그들이 소유한 부(wealth)가 2010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18) 보험개발원(2006), “해외보험동향,” 『계간 보험동향』, 여름호

HNWI 인구와 부의 성장은 2010년에 보다 안정적 수준으로 HNWI 인구는 8.3% 증가한 1090만명으로 늘었고 HNWI의 금융자산은 9.7% 증가한 미화 42조7000억달러를 기록했다<sup>19)</sup>. 초고소득자(Ultra-HNWIs) 인구는 2010년에 10.2% 증가했고 이들의 자산은 11.5% 늘었다.

## 2) HNWI의 금융서비스 이용 및 소비행태

고액순자산가(HNWI)는 맞춤형 금융서비스인 개인재산 종합 관리서비스인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PB)<sup>20)</sup>'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표 3> 금융기관의 부유층고객 현황<sup>21)</sup>

거래금액별 부유층구분		세계 100대 PB	우리나라 12개은행
초부유층	500억원 이상	2%	-
상위부유층	50억원 이상	15%	0.2%
부유층	5억이상	29%	10.1%
대중부유층	1억이상	44%	89.7%

프라이빗 बैं킹활용과 관련하여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BCG)이 15개국의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150명의 HNWI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5)에 따르면<sup>22)</sup> HNWI들의 투자성향은 참여형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주도형과 위임형은 각각 28%, 24%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선호경향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 증식에 주력하는 자산 증식형 투자자가 73%, 위험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자산 보전형 투자자가 27%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국가와 상관없이 HNWI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 ① 금융지식이 해박하다.
- ② 평균 2.8개의 복수금융기관을 사용한다.
- ③ 금융기관 선택 시 추천과 전통을 중시 한다.
- ④ 거래 금융기관이나 담당 매니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 ⑤ 일반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

19) 2009년에는 HNWI 인구증가는 17.1% 그리고 부의 증가는 18.9%였다.

20) 금융서비스(banking service)는 불특정다수의 대중고객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public banking 과 목표로 하는 특정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private banking으로 나눌 수 있다.

21) Global Private Banking(2003), 『Wealth Management Survey 2003』, Pricewaterhouse Coopers  
국내 12개 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대상 고객현황, 2005, 재경위 국감자료 (환산단위 : 1US\$=1,000원)

22)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hb6589/is\\_1\\_13/ai\\_n29166816/](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hb6589/is_1_13/ai_n29166816/)

- ⑥ 기업금융과 프라이빗 बैं킹을 구분하여 이용한다.
- ⑦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중시한다.

3) 고액자산가의 지역별 분포

세계 HNWI 인구는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세계 HNWI 인구의 53.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미국은 아직도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HNWI가 있어 3만1000명의 HNWI가 세계 HNWI 인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세계 각지역 고액자산가 소비행태현황 (2007년기준)<sup>23)</sup>

(단위 :%)

	북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	세계 전체
기타	7	6	2	8	8	5.5
스포츠투자*	3	6	4	6	5	5.0
수집**	10	9	6	7	6	8.2
건강	11	7	14	7	13	10.2
사치품소비	13	9	15	9	14	11.7
고급관광	17	12	13	12	13	13.5
보석류구입	11	12	19	12	15	13.8
예술작품	11	22	13	21	10	15.9
고가제품구입***	17	17	14	18	16	16.2

\* 스포츠투자(sport investment): 스포츠 구단, 요트, 승마 등

\*\* 수집(collectibles) : 와인, 주화, 골동품 등

\*\*\* 고가제품구입 :자동차, 보트, 제트비행기 등

<표 4>에서 보면 고액의 자산가들의 소비행태는 고가제품이나 보석류, 예술작품 구입이나 고급관광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고액자산가들은 보석류 구입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5>와 비교해서도 볼 수 있는데, 자산보유현황에 있어서 부동산 보유비중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액자산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보유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3) 김우재, 국내의 프라이빗 बैं킹 분석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09

<표 5> 아시아 지역 고액자산가들의 자산보유현황<sup>24)</sup>

(단위 :%)

국가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대체투자
호주	38	12	14	28	8
중국	29	19	21	21	10
홍콩	33	16	20	23	8
인도	36	18	15	23	8
인도네시아	31	14	20	23	12
일본	17	22	34	21	6
싱가포르	33	12	22	25	8
한국	20	14	20	40	6
대만	32	22	19	17	10

이는 자산의 소비형태나 보유형태 모두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저량(stock)이 되어 경제의 순환구조를 이루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의 순환구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형태가 유량(flow)이 되어 경제적인 거래가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산의 보유형태도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자산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재원이 되어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운용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2) 국내 고액자산가 현황

국내 부유층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메릴린치의 부자보고서(WWR)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 수는 2008년에 약 105,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보유비율 증가와 금융위기 이후 주가회복,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지속, 고액연봉 계층의 등장으로 신흥부유층이 형성되어 ‘백만장자’ 이상의 주식부자 수가 총 3,398명으로 2010년 보다 약 8.1% 높아졌다<sup>25)</sup>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최상위 소득자와 최하위의 평균수입액 비율이 약 9:1 수준으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부자는 2007년 43만3000명(100명당 1.3명)에서, 2017년에는 105만3000명(100명당 5.5명)으로 추정된다.

### 1) 부동산과 현금자산 보유비중 높음

24)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y Survey, April, 2008

25) 재벌닷컴이 종가 기준 상장사 1807곳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지분가치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뉴시스, 2011년 6월 27일자 기사내용

앞에서 제시한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의 부유층들이 자산을 보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부동산이다<sup>26)</sup>.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데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표 6>의 자료를 보면 예금 및 적금의 형태가 44.7%로 압도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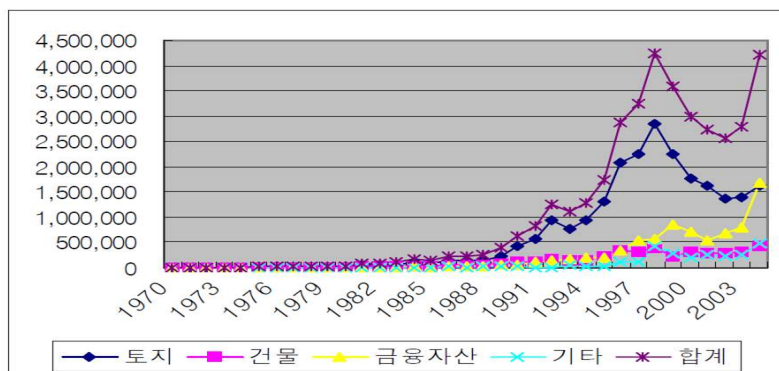
<표 6> 한국의 고액자산가 금융자산보유구성<sup>27)</sup>

자산항목	금융자산배분비중
예금또는 적금	44.7%
주식	20.2%
보험	15.9%
펀드	9.1%
채권	9.0%
기타	1.0%

## 2) 상속재산의 증가

앞에서 살펴본 바 영국의 경우에는 고액자산가의 50% 이상이 노년층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한국시티은행이 2010년 발표한 ‘한국의 부자보고서’에 따르면<sup>28)</sup>, 한국의 상위 10% 부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의 고액자산가 역시 노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연령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5>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1970 - 2004년)



26) 2006년 7월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부유층들이 미국의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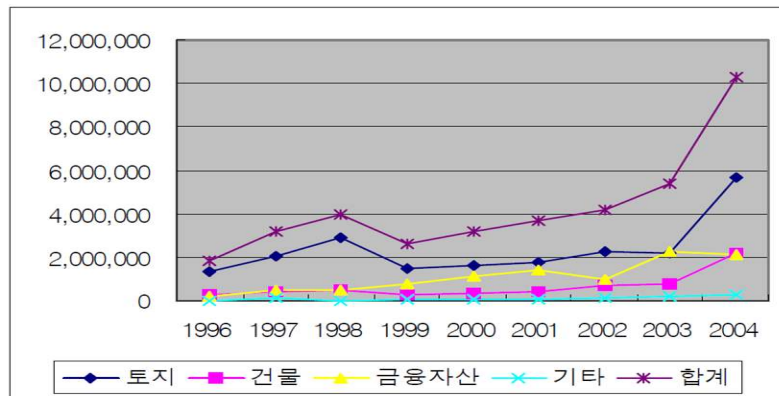
27) 보험개발원(2004), “보험회사의 부유층 자산관리 사업필요성 및 시사점,” 『계간 보험동향』, 제 29호, 봄호

28) 금융자산 상위 10%인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임



한편, 자산규모 30억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상속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의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9)</sup>. 김진·원종학(2006)의 연구보고서<sup>30)</sup>에서 지난 30여년에 걸친 상속재산가액을 검토한 결과 <그림 5>에서 보듯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상속재산가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은 개인의 부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의 세대 간 이전(generation transfer) 규모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연도별 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1996-2004년)



<그림 6>에서와 같이 증여자산의 형태는 토지와 금융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정리하면 <그림 7>와 같이 한국의 노년층 고액자산가와 자산보유형태를 요약할 수 있다.

<그림 7> 한국의 노년층 고액자산가와 자산보유형태



즉, 상대적으로 전체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는 절대적으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액자산가 중에는 노령인구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산보유형태는 경제력이 생산이나 투자활동에 투입되어 경제순환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9) 중앙일보, 2010년 6월 6일자 기사내용

30) 김진, 원종학 (2006),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3) 또 다른 은퇴계획의 필요

#### 1) 미국의 노년층 고액자산가의 자산보유형태

한국의 고액자산가와 영국 또는 미국의 고액자산가는 연령 면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고액자산가의 자산보유형태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미국의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보유형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여러 연구자들<sup>31)</sup>의 분석자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생명보험마케팅 자료조사전문기관인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sup>32)</sup>에서 <표 7>과 같이 미국부유층의 자산보유비중에 대해 요약 정리한 조사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표7> 미국 부유층의 금융자산 구성비율<sup>33)</sup>

자산구성	가입률(중복가입가능)	평균보유자산규모	비중
<b>퇴직계정 자산</b>	<b>93%</b>	<b>\$316,300</b>	<b>48%</b>
401(k), 403(b)	80%	224,200	33
IRA, Keogh	72%	164,700	15
<b>퇴직계정 이외자산</b>	<b>98%</b>	<b>\$497,600</b>	<b>52%</b>
현금등가물	91%	85,600	17
유가증권	65%	319,300	14
뮤추얼펀드	60%	140,600	9
연금	25%	192,400	3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44%	105,100	6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8%	214,000	1
기타	20%	204,800	4

퇴직계정자산이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과 같이 퇴직하기 직전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보장성연금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장기연금계획을 말한다. 퇴직계정 이외자산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금융자산보유형태와 비교하면 현금등가물의 비중이 17%로 한국의 44.7%(<표 6> 참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자산

3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신문식·이경희(2004), 부유층 자산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하나금융경제연구소(2006), 자산관리서비스시장 발전에 대한 대응방안, 『금융연구』

32) 최근에는 기관의 명칭을 LIMRA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33) LIMRA International (2003), Finances of the Affluent

가의 경우는 보험의 비중(15.9%)이 큰 데 비해서 미국의 자산가들은 보험비중이 작고 상대적으로 개인이 추가로 계약하여 장기간 납부하는 연금이나 펀드의 비중이 더 많다. 이는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이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렇게 모아진 재원은 자본(capital)으로 조성되어 자본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운용됨으로써 생산 또는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증권화(securitization)되어 자산이 거래<sup>34)</sup>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의 고액자산가와 같이 부동산의 형태로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점에서 유동화가 내지 부분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적동기(precautionary need)에 의한 현금자산의 보유비중을 비례적으로<sup>35)</sup>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2)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사회적수용

고액자산가 또는 부유층은 연령대가 노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은퇴후에는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축적된 자산이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산상속 또는 증여는 단기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요한 사회적인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상속이나 증여의 과정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3) 기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미국의 기부전문가와의 면담<sup>36)</sup>에서 기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기부자의 입장에서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액자산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개인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인데 단지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해야 한다거나, 저렇게 써야한다는 식의 간섭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로부

34) 자산(assets)이 "거래될 수 있는(tradable)"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자산이 거래될 수 있다면(tradable assets)"효율적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35) 부동산보유비중이 높으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이른바 fire sale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금재원을 확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납부를 위한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36) 2011년 Weber State University의 재단의 기부모금 담당자인 Don Spainhower (Director of Gift Planning)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30년 이상을 대학에 재직하면서 모금업무만 담당하였다고 한다.

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조용한 소리(silent voice)<sup>37)</sup>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자산가들은 사회가 부는 호루라기(whistle)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단지 사적인 권리행사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으로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책무에 비추어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식하여야 하고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서 자산의 축적이 해석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의 세대간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대안으로서 계획기부(planned gift)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현역시절부터 노년기의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자산축적 및 운용을 위한 생애계획(life cycle plan)의 일환으로서 기부를 고려하는 계획기부를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획기부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기부상품이 시장성을 갖추기 위한 환경요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계획기부상품이 어떻게 활용되며,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계획기부상품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계획기부상품

#### (1) 계획기부의 개념

##### 1) 계획된 기부(planned gift)

기부(gift)는 쌍무적인(bilateral) 일반 거래(transaction)<sup>38)</sup>와 달리 한 당사자만이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선(donation)이나 기부(gift)는 지역사회발전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또는 자선(charity)이나 박애주의(philanthropy)에서 정의껏 모금(money raising)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 이후에, 일시적인 모금행사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선한 의지(good will)가 사업(business)과 결합하여 지속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보다 규모가 큰 기부기금(funds)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항구적으로 선한 비전(good vision)을 달성

37) 고액자산가들은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금파티에 초청하면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ainhower씨는 행사에서는 모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관계(relation)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

38) 거래(transaction)는 한 당사자는 인도 의무(delivery)를 지고 다른 당사자는 결제의무(settlement)를 지는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다.

하기 위해 더 큰 자본(capital)<sup>39)</sup>을 출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사업미션을 수행하는 신탁(trust)또는 재단(foundation)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림 8> 기부방식의 발전<sup>40)</sup>



## 2) 'Doing Good'에서 'Doing Well'로

계획기부는 “계획된 기부(planned gift)”로서 “계획되지 않은 기부(unplanned gift)”와 차이가 있다. “계획되지 않은 기부”는 ‘즉흥적, 일시적, 감성적 특성’을 지닌다면, “계획된 기부”는 ‘의도적, 지속적, 이성적 특성’을 지닌다. “계획되지 않은 기부”가 ‘기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doing good)이라는 생각에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계획된 기부”는 ‘어떻게 기부해야 잘하는 것인가’(doing well)라는 차원에서 기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기부는 목적성과 효율성 차원에서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개인들로부터의 고액기부(증여)계획을 설계해주는 전문 컨설팅회사가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의 경우 계획기부(Planned giving) 프로그램이 여러 대학교들, 병원, 박물관 그리고 각종 재단에 대중화되어 있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sup>41)</sup>. 협상 및 조정과정에서 흔히 조세, 법률, 재무, 회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기부를 하는 방식 또는 수단에 대해 ‘기부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와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기부방식인가?’에 대한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를 하게 되며, 계획기부를 유치하는 측에서도 협상과정에는 직접개입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위탁한다고 한다<sup>42)</sup>. 따라서 계획기부(Planned Giving)는 박애주의(Philanthropy)차원이 아니라 사업(Business)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기부행위 속에 잠재된 기부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요구(needs)를 구체화시켜 계획기부상품이라는 구매대상(wants)을 만들어야 한다.

39) 자본(capital)이란 ‘특정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으로 상업목적으로 출연된 자본은 상업자본(commercial capital), 공장시설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을 공업자본(industrial capital)이라고 한다. 기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한 자본이므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

40) 문헌과정에서 연구자가 체계를 잡은 것으로 인터뷰과정에서 미국의 기부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다.

41) 미국의 기부전문가들은 계획기부의 경우 경험적으로 최소한 3~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42) 이에 대해서는 Texas Tech University에서 기금관리에 자문을 하고 있는 Deena Katz 교수(CFP)와 Weber State University의 대학재단에서 기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Nathan S. Clark(Director of Development & Annual Fund)가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 3) 고령화사회의 계획기부 상품

연구자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계획기부를 목적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검토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잠재된 기부자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는 목적성 측면에서 ‘자산의 세대간 이전’ 이거나 ‘노후의 안정적 생활유지’ 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자산의 세대간 이전은 ‘상속이나 증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냐의 문제이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는 ‘현금흐름의 안정적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는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효율성은 결국 ‘조세적 혜택’이 핵심이고, 현금흐름의 안정적 확보의 효율성은 ‘위험헤지<sup>43)</sup>와 파산위험의 제거’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미국의 기부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령층 고액 자산가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목적성, 효율성보다 상위의 차원이라고 조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영향력’(influence)<sup>44)</sup>이다. 영향력 측면에서는 ‘가족내에서의 영향력행사’와 ‘사회적인 영향력의 유지’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동기가 있으며 이는 목적성이나 효율성 검토이전에 선행된다고 하였다.

<표 8> 계획기부와 다른 형태의 기부와의 비교<sup>45)</sup>

구분	계획기부	고액 기부	다른 형태의 기부
기부(자산)의 종류	모든 형태	모든 형태	대부분 현금
기부의 규모	모든 규모	모든 규모	모든 규모
기부의 사용 목적	모든 목적	모든 목적	모든 목적
기부 후 사용 시기	대부분 연기(deferred)	대부분 즉시 사용	대부분 즉시 사용
자선적 세금 공제	허용	허용	허용
기금 운용에 사용	권장되지 않음	권장되지 않음	사용
기금 자본 증대에 사용	사용	사용	가끔 사용
기금 형성에 사용	사용	사용	대부분 사용되지 않음
조직 미션 강화에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목적과 사용 시기에 대한 기부자의 통제권	있음	있음	대부분 없음
기부금을 통해 연소득 제공, 양도소득세/ 상속세 감면	그려함	가끔 그려함	대부분 그렇지 않음
재무 및 상속 계획으로 신중히 고려	그려함	가끔 그려함	대부분 그렇지 않음
기부가 현재에 이루어져도 대부분 이후 미래에 사용	그려함	가끔 그려함	대부분 그렇지 않음
현금 이외의 형태	대부분 그려함	때때로 그려함	대부분 그렇지 않음
매년 반복적으로 기부	대부분 그렇지 않음	대부분 그렇지 않음	그려함
큰 규모	그려함	그려함	대부분 그렇지 않음

43) 위험헤지(risk hedge)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재무관리 용어이다.

44) 계획기부 전문가인 Texas Tech University의 Russell James 교수(변호사, CFP)의 comment이다.

45) Barrett, D. R and M. E. Ware(2002), 『Planned Giving Essentials: A Step-by-Step Guide to Success』, p.5.

미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계획기부는 현재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계획기부상품 중에는 신탁형태로 기부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는 상품도 있고, 자산기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연금의 형태로 수입을 보장받는 상품도 있다. 또는 집이나 부동산을 기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각종 세금공제의 혜택을 얻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혜자에게 기부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갖는다. 계획기부의 수혜주체는 주로 대학교, 병원, 재단, 문화기관, 공공자선단체 등의 비영리조직의 재원확보의 기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기부의 주체를 노령층 고액자산가로 보고 합리적 동기에 의해 자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기부상품을 선정하는 기준과 상품별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계획기부 상품현황

### 1) 계획기부 상품별 규모

계획기부상품에 대해서는 National Philanthropic Trust(2010)에서 개인재단과 계획기부의 규모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표 9>에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표 9> 개인재단 및 계획기부 종류별 개수 현황 (2008~2009)

(단위: 개 / %)

	2008	2009	증감율(%)
기부자조연구금 (DAF)	147,990	152,365	3.0
자선잔여신탁 (CRT)	96,248	95,928	-0.3
개인재단 (Private Foundation)	75,187	75,595	0.5
자선잔여 연금신탁 (CRAT)	19,241	18,572	-3.5
자선선행신탁 (CLT)	6,521	6,626	1.6
집합투자상품 (PIF)	1,488	1,415	-4.9

계획기부상품의 종류별로 숫자를 보면 기부자조연구금(DAF)<sup>46)</sup>이 2009년 총 152,365개로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자선잔여신탁(CRT)으로 변형된 형태인 자선잔여연금신탁(CRAT)까지 포함하면 114,500개<sup>47)</sup>이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개인재단(private

46) 기부자조연구금(Donor Advised Fund;DAF)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7) 자산잔여신탁(CRT)은 자산잔여연금신탁(CRAT)과 자산잔여 변액신탁(CRUT)의 변형된 형태가 있으며 이에

foundation)<sup>48)</sup>이 75,595개이며 그다음으로는 자선선행신탁(CLT)이 6,625개, 집합투자상품(PIF)이 1,415개 순이다. 따라서, 숫자로만 본다면<sup>49)</sup>, 기부자조언기금(DAF),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그리고 재단(foundation)이 가장 전형적인 계획기부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보듯이 총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이 5,834억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축적된 자산이 효율적으로<sup>50)</sup>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는 계획기부상품 전체 규모의 약 80%를 차지한다.

<표 10> 개인재단 및 계획기부 종류 별 자산 가치 현황 (2008~2009)

(단위 : billion 달러/ %)

	2008	2009	증감율(%)
개인재단 (Private Foundation)	565.10	583.4	3.3
자선잔여신탁 (CRT)	106.43	96.06	-9.7
기부자조언기금 (DAF)	28.91	25.23	-12.7
자선잔여 연금신탁 (CRAT)	19.65	18.27	-7
자선선행신탁 (CLT)	8.93	8.14	-8.8
집합투자상품 (PIF)	1.46	1.32	-9.6

두 번째로 큰 규모는 자선신탁으로 자선잔여신탁(CRT)과 자선잔여연금신탁(CRAT)을 합하면 1,143억달러로서 16%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기부자 조언기금(DAF)으로서 252억 달러규모에 비중은 3%이다. 나머지 자선선행신탁이나 집합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아직은 비중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기부상품이 도입된 역사를 고려해보면 재단이 가장 앞섰으며 축적된 자산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 상대적으로 도입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부자조언기금(DAF)의 경우에는 자선잔여신탁 규모의 약 1/3가량이다.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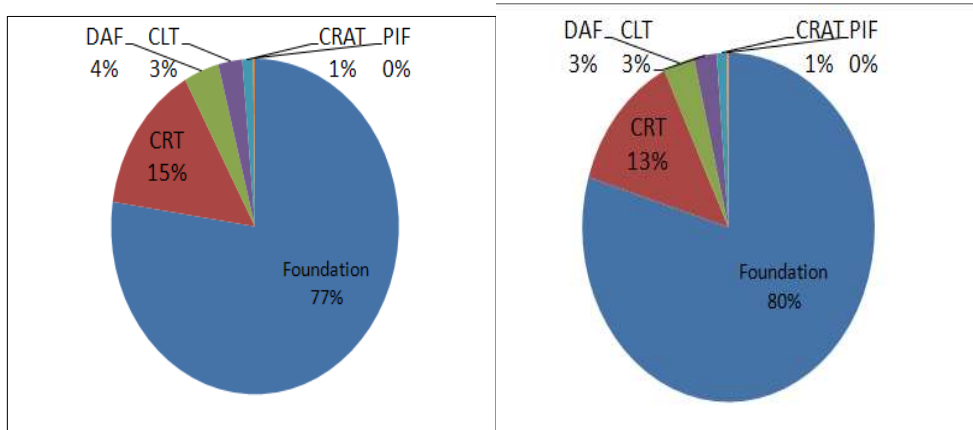
48) private foundation을 개인재단으로 번역하였지만, 여기서 'private'은 'non-operating'의 의미이다. 재단이 직접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재원을 넘겨주는 일반 하는 재단을 non-operating foundation이라고 한다. 반면에, 병원, 요양원, 교아원 같이 재단이 직접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면 operating foundation이라고 하고 이를 public foundation이라고 한다.

49) 숫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계획기부상품을 설립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50) 물론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단이 해체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재단은 재원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설한 재단이 남아있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단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계획기부상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 9> 개인재단 및 계획기부 종류별 자산 가치 비율 (2008~2009)



### (3) 계획기부상품의 유형과 특성

#### 1) 자료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및 세미나실시

연구자들<sup>51)</sup>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지닌 계획기부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텍사스주의 러벅에 있는 Texas Tech University 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Weber State University를 방문하여 재단 및 기금모금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자료 수집 및 기부전문가인 Russell James교수와 5회의 세미나를 하였다.

방문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계획기부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도를 그려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법률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 2) 유증(bequest)

유증은 사망시점에 유언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다. 계획기부 중 가장 하기도 쉽고,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기부의 80%가 유증과 신탁(trust)으로 가장 보편화된 형태의 기부라고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1) 금융상품과 미국세법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세법과 법률적인 검토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의 이상신교수가 맡았다. 연구자들은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도움으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획기부상품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림 10> 유증(bequest)



면담결과 유증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변호사인 미국의 기부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의식(state of mind)이 있는 상태에서 요식절차를 충족하여 작성된 유언(will)의 내용에 가족을 배제하고 모두 기부하는 내용이 문언으로 작성<sup>52)</sup>되었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이행되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유증이라는 형태의 기부는 잠재적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고 싶어도 생전에는 실행할 수 없어 기부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기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및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sup>53)</sup>.

계획기부상품은 크게 연금형상품과 신탁형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연금형상품은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골동품, 귀금속 등이 기부의 대상자산이고, 신탁형상품의 경우에는 유동화가 용이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운용이 가능한 자산의 기부가 이루어진다. 유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의 특성에 제한이 없이 기부자가 수혜자에게 기부를 하게 된다.

### 3) 유동화가 용이한 자산의 계획기부

기부자로부터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유동화가 용이한 자산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의 운용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대리인(agent)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이는 자본시장 폭을 두텁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기부상품에는 자선기금(fund)형태와 신탁(trust)형태 그리고 재단형태(foundation)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기부상품은 기부자가 자산에 대한 기부를 결정하면( $t_0$  시점) 그 시점에서 순기부액(net amount of donation)의 현재가치(present value;PV)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약정한 시점( $t_N$  시점)에는 그 원본자산(principal)은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52) 문언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데 그 때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해하였다.

53) 물론 최근에는 유증의 형태가 다양해져서 기부자는 살아 있는 동안은 자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기부를 약속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되는 기간은  $t_0$ 시점과  $t_N$ 시점 사이로 이때의 소유권(ownership)이 누구에 있는가에 따라 펀드와 신탁 그리고 재단으로 구분된다. 그 기간사이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기부자에게 있는 것이 펀드이고, 분명하게 기부자에게 있지 않는 것이 재단이라면, 신탁(trust)은 '떠있는 공(a ball in the air)'과 같은 상태이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sup>54)</sup>.

### ① 자선기금(Fund)

자선기금(fund)은 자산의 주인인 기부자가 일정기간 후 수혜자에게 기부의사를 확정 한 것이다. 다만, 그 기간이 되기까지 자산에 대한 운용을 대리인에게 위탁한 형태이다. 수탁대리인은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운용수익(income)을 발생시키면, 그 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동안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집합투자기금(Pooled Income Fund; PIF)이고 기부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산의 원본에 포함하여 재투자하는 형태가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DAF)이다. 이를 <그림 11>으로 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자선기금(funds)



#### - 집합투자기금(Pooled Income Fund; PIF)

여러 기부자로부터 출연된 기부금을 pooling하여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를 세우고 투자를 한 뒤, 일정기간 기부자에게 수익을 분배<sup>55)</sup>한다. 기부자는 생전에는 일정금액을 펀드로부터 분배받지만 사후에는 수혜자에게 펀드의 지분권이 귀속된다.

#### -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s: DAF)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은 수혜자에게 귀속된다. 일정기간 동안 운용수익이 기부자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펀드에 유보된다는 면에서 집합

54) 우리나라 신탁법에서는 신탁을 설립하는 시점에서 소유권도 이전된다.

55) 이때, 수익은 펀드운용으로부터 나오는 실제 투자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의 특성상 시중금리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최근 저금리추세를 반영하여 수익률이 5%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거의 찾지 않는 계획기부상품이다. PIF는 금리가 높아지면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투자기금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부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펀드운용수익의 배분에 대한 통제력(controll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 펀드규모가 큰 대학교나 병원 등에 있어서 거액기부자 또는 계획기부자의 기부를 받은 후, partnership을 형성하여 기부자를 GP(general partner)로 펀드운용에 참여시키는 형태<sup>56)</sup>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이름 또는 가족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데, 최근 Fidelity가 출연한 리델 리티 기부자조언기금(DAF)이 대표적이다<sup>57)</sup>.

## ②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자선신탁(CT)은 기부자(donor)가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신탁(trust)을 설립하고 연방세에 대한 조세적인 혜택을 얻으면 수혜자(donee)는 수탁자(trustee)가 되어 신탁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구조이다. '자선(charitable)'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중에서 미국세법(IRC) §501(c)(3)에 따라 연방세가 면제되는 단체로 IRC §170(c)(2)(B)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종교, ② 자선<sup>58)</sup>, ③ 과학, ④ 문학 또는 ⑤ 교육 목적으로서만 조직되고 운영되거나 또는 국내 혹은 국제 ⑥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또는 ⑦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목적으로 운영되는”<sup>59)</sup>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7개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charitable donee”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미국에서 설립되고 운영<sup>60)</sup>되어야 하며, 둘째는 단체의 어떠한 순이익도 개인이나 주주의 이해를 위한 곳에 흘러가서는 안 되며<sup>61)</sup>, 셋째는 입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로비단체가 아니어야<sup>62)</sup> 하고,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sup>63)</sup>.

자선신탁의 경우에는 한국의 모대학의 사례와 같이 기부를 받은 후에는 소유권이 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운용 및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탁을 설립할 때, 신탁자산을

56) 대개의 경우는 기금을 기부해준 기부자나 기부자의 가족이름이 시설이나 건물에 명명이 되고, 한국의 법제와는 다르게 partnership을 형성하여 general partner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이 가능하다.

57) 기금을 Fidelity가 사회에 기부목적으로 출연했다고 해서 Fidelity가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58) 미국세법시행령(Reg.§1.501(c)(3)-1(d)(2))에서 다시 "자선(charitable)"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는데 ①빈곤구제 (relief of poverty), ② 선교(advancement of religion),③ 교육진흥(advancement of education), ④ 과학진흥(advancement of science), ⑤ 정부부담의 감소(lessening the burdens of government), ⑥사회복지증진(promotion of social welfare),⑦ 지역환경정화 (community beautification and maintenance), ⑧ 건강증진(promotion of health), ⑨예술진흥(promotion of the arts),⑩ 공공복리 증진 (promo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rough law),⑪지역경제개발(local economic development)등이다.

59)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purposes, or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but only if no part of its activities involved the provision of athletic facilities or equipment),or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60) IRC §170(c)(2)(A)

61) IRC §170(c)(2)(C)

62) IRC §170(c)(2)(D)

63) IRC §170(c)(2)(D) 후반부

관리하고 운용한 후 수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신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관리자가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탁 주체가 변경되거나 신탁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림 12>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그림 12>에서 보듯이 기부자가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을 설립하게 되면, 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운용된다. 이렇게 공공성 또는 사회적 의미가 강한 자산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을 사회적 자본시장(social capital market)<sup>64)</sup>이라고 한다. 자선신탁에는 자선잔여신탁(CRT)과 자선선행신탁(CLT)이 있는데, 신탁기간동안 발생한 자산운용수익과 원본자산의 일부분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돌려받은 후, 나머지를 수혜자에게 기부하면 자선잔여신탁이라 한다.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정하여 기부를 하고, 나머지를 수혜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선선행신탁이라 한다.

<표11> 자선잔여신탁(CRT)과 자선선행신탁(CLT)의 규모<sup>65)</sup>

(단위: \* 개 / \*\* 천달러)

구분	CRT			CLT		
	2006	2007	증감률	2006	2007	증감률
총 개수*	116,062	115,754	-0.3%	6,298	6,377	1.3%
총 자산**	90,163,123	97,307,466	7.9%	16,485,658	18,690,926	13.4%

64) 여기서 말하는 'social'은 '사회친화적인(society friendly)'의 의미이며 반대개념 'personal capital'이다. 사회 자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social capital consists of the assets that cannot be passed on to heirs; it is capital that will be paid in taxes unless directed to charity. By using charitable planning tools such as remainder trusts, lead trusts, and family foundations, however, a donor not only disposes of his or her social capital in the way that the donor wants but does so in a way that provides benefits to the donor's spouse, children, and descendants."

Ray, Thomas Jr (2007), 『Charitable Gift Planning- A Practical Guide for the Estate Planner』, Probate and Trust Law, p.xx

65) Lisa Schreiber, 「Split-Interest Trusts, Filing Year 2007」

-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자선잔여신탁(CRT)을 통한 기부를 하는 중요한 경제적 동기는 자산의 유동화에 있다.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조금 혹은 전혀 내지 못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하고 싶지만 양도 소득세가 과중하여 이를 피하고자 자선잔여신탁(CRT)을 만들게 된다. 자선잔여신탁(CRT)을 세분하면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CRAT)<sup>66)</sup>와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CRUT)<sup>67)</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CRAT는 연금처럼 트러스트의 수익이 얼마든 최초 설정한 고정액을 받는 것이고, CRUT는 트러스트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형태인데, 고정액 지급방식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자선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 CLT)

기부자는 현금 혹은 재산을 신탁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선단체나 재단에 기부를 한다. 약속 된 기간이 끝나면 재산의 소유권은 구체적인 수혜자에게로 돌아가는데, 주로 기부자의 가족이다. CLT를 선택하는 기부자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면서 기부를 하고자 한다. 기부자는 신탁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세금공제효과를 얻고 일정 기간 동안 기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기부자의 가족이나 기부자에게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sup>68)</sup>.

<표 12> 자선선행신탁(CLT)의 유형 및 특징

	Qualified Grantor Trust	Qualified Nongrantor Trust	Nonqualified Grantor Trust	Nonqualified Nongrantor Trust
기부자는 트러스트 형성에 있어 lead interest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Yes	no	no	no
기부자는 트러스트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yes	no	yes	no
기부자는 매년 자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no	no	yes	no
트러스트는 매년 자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n/a	yes	n/a	yes
자선적 기여에 대한 감면(공제) 상한선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no	yes	no	yes
미래 자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yes	no	no	no

66) 이를 “크랫”이라고 읽는다.

67) 이를 “크럿”이라고 읽는다.

68) 미국세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신탁 자산을 맡길 때, "일정기간"을 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존기간"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젊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제 3자를 일정기간의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세제상의 평균예상수명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효과를 얻은 후, 사후에 다시 소유권을 찾음으로 절세를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략을 "vulture" 또는 "ghoul"이라 한다. Debra Ashton(2004), ibid, p.294

### ③ 재단(foundation)

재단은 자신이 실제 자산운용 또는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operating foundation과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non-operating foundation으로 구분된다. 병원, 양로원, 박물관등의 operating foundation을 public foundation이라 하는데 수적으로는 극히 적다. 대부분은 private foundation으로 non-operating foundation을 말한다. 재단의 운용구조는 <그림 13>에서 보듯이 신탁과 유사하다.

<그림 13> 재단(foundation)



개인재단은 상대적으로 공공의 관여 및 지원이 제한되며 프로그램 운영보다 기금을 지원하는 일을 위주로 한다. 개인재단의 활동은 주로 자선적 역할을 하므로, 그들이 받는 대부분의 수입은 미국세법 Section 501(C)(3)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재단들은 다양한 활동에 관한 세법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개인재단이 준수해야하는 운영규칙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수익과 관련하여, 순투자소득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자선적 지출(charitable payout)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지출(payout) 비율에 비해 1%이상 늘어났을 경우, 세금의 비율을 순 투자소득의 1%로 인하하여 준다.

둘째, 내부거래(Self-dealing) 금지이다. 공공기부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 이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거래(비자격자와의 재무거래 등)가 금지되거나 처벌받게 된다. 내부자란 직원, 이사, 신탁자 또는 행동에 책임 있는 모든 피고용인을 비롯하여, 해당과세연도의 전체 기부액 중 2% 이상을 기부한 사람, 재단에 대한 전체 기부금액이 5,000달러 이상인 사람, 자선신탁(CT)의 기부자는 자동적으로 내부자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재단 설립자의 선조, 배우자, 후손, 또한 후손의 배우자 등을 비롯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35%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인, 신탁, 파트너기관 등도 내부자로 본다.

셋째, 과세가능한 지출항목(Taxable Expenditure)인 a) 개인 지원금 대부분 b) 정치

활동 c) 로비활동 d) 공공자선단체 지원금이 아닌 지원금 e) 비자선목적의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재단이 지출한 비용은 과세된다.

넷째, 영리재산 초과분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개인재단은 재단과 내부자 전체가 영리기업(business enterprise) 이윤(interest)의 20%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내부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35%), 초과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5% 과세되며, 기간 내 초과분에 대해 처리되지 않으면 200% 추가 과세된다.

다섯째, 개인재단은 목적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투자를 금지하고 신탁의무를 준수하며 고위험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험투자로 평가된 금액의 5%가 과세되며, 투자에 참여한 재단 관리자에게도 5%를 과세한다. 또한 위험 투자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25% 추가 과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로그램과 연계된 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재단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순 자산의 최소 5%를 매년 배분하여야 하는 소득배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형기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60개월까지 지불 연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분되지 않은 소득의 15%가 과세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배분 소득의 100%가 과세된다.

<표 13> 개인재단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s)
재산세 (Estate Taxes)	생전이전 (lifetime transfers)	살아있는 동안 개인재단으로 이전된 자산은 더 이상 기부자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기부자의 재산 일부로 과세되지 않음
	사후이전 (transfers at death)	사후에 유산기부에 의해 개인재단에 가는 자산은 기부자의 재산에서 공제됨. 따라서 기부자의 재산 일부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Income Taxes)	생전이전 (lifetime transfers)	개인재단으로의 이전은 기부자의 현재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함. 이 공제는 총소득의 30% (공공 자선단체는 50%)로 제한됨. 개인재단에 준 평가 주식과 자산에 대한 공제는 기부자의 소득 20% 까지 가능함.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추어서 향후 과세연도에 허용되는 최대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자선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음
	사후이전 (post-transfer)	개인재단은 자선단체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됨. 그러나 개인재단은 투자 소득의 2%를 세금으로 지불해야함. 자선단체로의 재단의 자금분배액을 늘리면 이를 1%로 줄일 수 있음. 개인 재단은 영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영리사업의 상당 점유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영리사업의 소유권을 기부 받으면 재단은 5년 내로 자신의 이익권을 팔 수 있음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es)		개인재단으로 평가자산이 이전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음. 개인재단이 평가자산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증여세 (Gift taxes)		개인재단으로 이전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음



#### 4)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계획기부

자선기부연금(CGA)은 기부자가 현금이나 자산을 기부한 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회단체나 재단으로 넘어가지만, 재단에서는 기부자에게 살아있는 동안 그에 대한 수익을 일정기간 제공해주는 계약이다. 원래는 목장이나 창고, 건물 등의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을 자선 및 종교단체 등에 시설을 빌려주고,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그 이후에 자산을 기부하는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자산을 제공하면 부동산의 형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선기관의 영속성이 관건이 된다. 자선기부연금계약을 체결하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사회단체에 넘어간 상황이므로 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부도가 나는 경우, 약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다수의 주에서는 자선기부연금계약시 기부단체에게 보험계약을 강제하고 있다.

<그림 14> 자선기부연금(CGA)



자산을 기부 받는 단체는 기부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다른 수혜자(beneficiary)에게 여생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며, 마지막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기부금은 기부를 약속한 자선단체에 귀속된다. 기부자는 연금수혜자를 자신 단독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단독 지정, 또는 동시 지정(concurrently), 연속지정(consecutively)도 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의 기초자산은 기부된 자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가 보유한 총자산이 되며, 기부연금 펀드(gift annuity fund)의 투자성과와 무관하게 약속된 현금 흐름이 지급되어야 한다.

#### ① 즉각기부연금 (Immediate Gift Annuity)

즉각기부연금(immediate gift annuity)은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자선단체가 종신 수익 동의를 통해 현금이나 상장 증권을 기부받고,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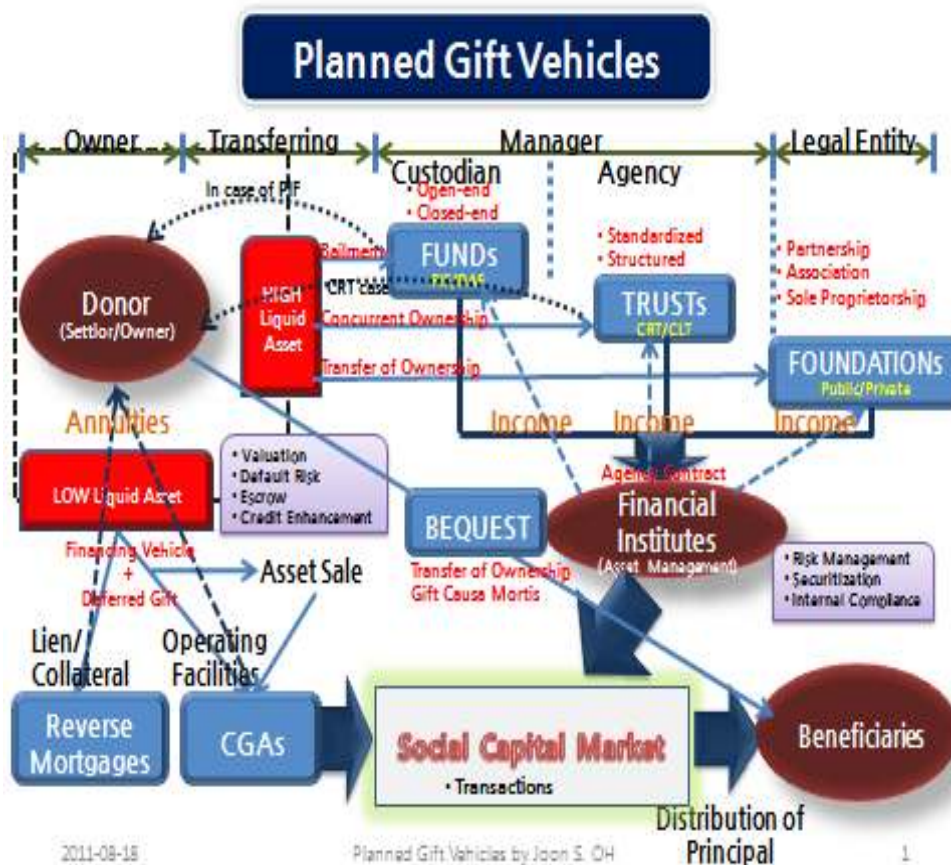
수혜자에게 생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부의 잔여 가치가 대상 자선단체 혹은 재단 등의 영구 기금에 귀속된다. 이 형태의 기부는 기부자에게 공익성 기부금 공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고정된 수입의 확보, 자본 이득세 절감, 상속세 절감 등의 혜택을 보장해 주게 된다.

## ② 기부거치연금(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

기부거치연금은 특정 기간(거치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 규모는 기부 액수, 기부 당시의 연령,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의 수혜자의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연도에 자선 기부로 인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거치연금은 특히 기부대상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계획기부상품의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5> 계획기부상품의 체계도



계획기부상품의 구성에 있어서 기부자(donor)와 수혜자(beneficiaries) 사이에 환경요인으로서 법적-제도적 환경과 자본시장환경이 존재한다. 법적-제도적 환경은 계획기부

상품의 설리요건과 세제혜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계획기부상품의 목적부합성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그리고, 자본시장환경은 계획기부상품이란 형태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모아지면,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운용되고 이는 생산 및 투자재원으로서 경제순환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4. 계획기부 상품도입을 위한 제언

##### (1) 기부산업(philanthropy industry)개념의 도입

계획기부는 지난 20년간 미국 주식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부재단의 수가 200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부행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회사, 그리고 연구 센터 등의 수도 급증하였다. 또한, 주식소유의 분산과 대중화로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 들게끔 한 것처럼 요즘에는 기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독점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다수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공유하고 지켜나가야 할 대중적 문화의 한 양태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부를 포함한 자선활동을 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일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이 실제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얻고 고객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은 재원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둘째, 자선활동을 벌이는 주체간에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개인, 지역 사회, 기업, 재단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성과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매겨지고 있다.

셋째,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차별화 시키기 위해 경쟁 중이며 때론 동업을 하고 이들 모두가 이리저리 규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틀이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며 이는 전진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 1) 산업의 관점에서 계획기부상품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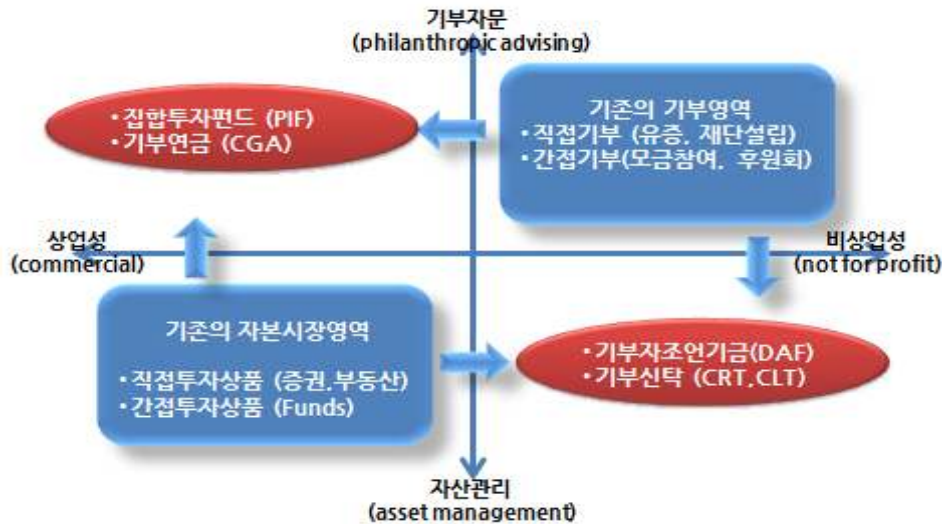
기부를 산업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장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기부상품들의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시도는 루시 번홀츠(Lucy Bernholz)가 대표적<sup>69)</sup>이라

69) 기부에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쟁과 효율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사회적인 자원의 최적배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길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Lucy Bernholz (2004), 『Creating Philanthropic Capital Markets; The Deliberate Evolution』, John

할 수 있다. 기부를 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다면 현재의 기부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루시 번홀츠는 기존의 기부는 누군가에게 “나은 결과를 위해 무엇을 집어 넣는것”<sup>70)</sup>인데 비해서 산업의 측면에서 기부를 파악하게 되면 누군가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전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sup>71)</sup>.

< 그림 16> 기부상품의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sup>72)</sup>



이를 <그림 16>을 통해 살펴보면, 산업의 관점에서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기부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자본시장영역에서 운용되던 자금의 운용처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기부의 영역은 철저한 비상업적인 동기하에 유증이나 재단설립을 통해 직접 기부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기부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비상업성을 유지하면서, 기부자의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자조언기금(DAF) 또는 기부신탁(CRT, CLT) 등의 금융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기부영역에서 상업성 또는 수익성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고자 한다면 집합투자펀드(PIF)나 기부연금(CGA)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의 관점인 자본시장의 영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기부문화로 정착되면서, 기존의 상업성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집합투자펀드(PIF)

Wiley & Sons, Inc.

70) "‘putting something in’ to make something ‘better come out’"

Lucy Bernholz, *ibid.*, p.19

71) 연구자는 이를 편무적 사회계약(unilateral social contract)의 시각을 쌍무적 사회계약(bilateral social contract)의 시각으로 기부의 개념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72) 루시 번홀츠가 계획기부상품을 기부산업의 관점에서 보기위해 제시한 두가지 축(상업성-비상업성/자산관리-기부자문)에다가 연구자가 계획기부상품의 위치를 추가하였다.

나 기부연금(CGA)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가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자산의 상업성을 포기한다면 기부자조언기금(DAF)이나 기부신탁(CRT,CLT)으로 자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필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계획기부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산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특성이 있다. 고액자산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은 이를 위해 자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자산보유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액자산가들의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획기부상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기부상품은 고액자산가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현금흐름의 확보와 부의 세대간 이전이 노령층 고액자산가들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사회에 대한 기부와 함께 이에 대한 자산관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부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시장과 상품이 거래될 수 있다면,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유지수준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 (3) 기부신탁(charitable trust) 제도의 도입필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결과, <그림 16>에서 보듯이 향후 우리사회가 수용가능하고, 동시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고 경제순환을 이끌 수 있는 순기능을 하기 위한 계획기부상품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두 개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쪽 영역은 자본운용에 있어서 상업성 내지 수익성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집합투자펀드(PIF)와 기부연금(CGA)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집합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거래규모가 적고, 대학이나 병원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연금의 경우에는 노후보장을 위한 현금흐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사회단체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재단운영의 부실로 인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기부상품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기부영역에 있는 유증이나 재단설립에 있어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기부상품 시장영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본운용의 동기를 상업성에서 비상업성으로 전환시키는 상품이 기부자조언기금(DAF)이나 기부신탁(CRT,CLT)의 도입

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현재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노후를 대비한 계획기부상품으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기부신탁중에서도 특히 기부잔여신탁(CRT)이고 그 다음으로 기부자조언기금(DAF)인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꼭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에 따라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조세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에 대한 검토와 명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신탁법이 개정되었고, 공익신탁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법적인 절차가 복잡한 기부신탁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함께 검토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부잔여신탁(CRT)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구조에 있어서는 기부연금(CGA)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공적인 감독기구가 운용에 대해서 감시하게 된다면 부도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잔여지분(remainder interest)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기부하기 때문에, 부의 세대간 이전을 억제하고 사회환원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III. 고령화 시대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법적인 검토

- 이상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 1. 미국법상 信託을 통한 계획기부와 그 사례

##### (1) 신탁을 통한 계획기부

###### 1) 미국법상 신탁 개관<sup>73)</sup>

미국에서의 trust는 상속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상속은 비 유언상속인(非遺言相續人)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은 사망시 처분가능한 재산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sup>74)</sup>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언이나 부동산의 공유, 생명보험, 증여 또는 신탁과 같은 유언대용수단을 이용하여 전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sup>75)</sup>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검인절차의 대상이 된다. 검인절차는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확정된 후에 유산을 정리하여 분배하는 절차이고, 유언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을 정리하여 유언 없는 상속의 규율에 따라 유산의 분배를 행하는 절차이다. 검인대상 재산은 사자의 유언에 따라 혹은 법정상속에 따라 이전하는 재산이 된다. 그에 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발효한 유언 이외의 증서에 기초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검인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76)</sup> 이 경우 활용되는 것이 신탁(trust)이다. 그러므로 유언과 법정상속, 신탁 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언과 신탁을 묶어서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sup>77)</sup> 유언이 주로 법령에 기초하여 규율됨에 반하여 신탁은 관례법에 더 의존하며, 유언이 유산 중 어느 부분이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반하여 신탁은 분배를 하는 사람의 의무와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sup>78)</sup>

73) 이상신·박훈,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아름다운재단 연구보고서(2010.4)의 내용을 요약보충하였음

74) 2011. 7. 연구자들이 Texas tech의 James Russel 교수를 면담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음

75)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 저/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박영사(2011), p4 : 同書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이나 다른 친족들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p.38면 및 각주10 참조).

76) 川口幸彦, 「信託法改正と相續稅 贈與稅の諸問題」, 稅大論叢57號(2008.6), p.338

77)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의 원 제목은 『Wills&Trusts』이다.

미국에서는 신탁법은 주법뿐이고 national law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 단위에서 가능한 신탁이 있고, 할 수 없는 신탁이 있다. 현재 신탁법의 통일화를 향한 움직임도 있는데, 2000년에 성립한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제3차 신탁법 리스태이트먼트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UTC는 2008년 3월 현재 미국의 20개주가 채택하였고 3개 주가 입법에 반영하였다. 최근의 신탁법 리스태이트먼트는 Prudent Investor Rule (신중한 투자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Prudentman Rule)와 관련된 특칙을 규정한 형태이다.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도 많이 있다.<sup>79)</sup>

어쨌든 미국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가 그의 재산의 보통법상의 법적 권원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형평법상의 권원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신탁은 본질적으로 권원을 보통법상의 권원과 형평법상의 권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보통법상의 권원과 형평법상의 권원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동시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되어 trust가 소멸하는 원인이 된다.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의 수익자는 수탁자와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설정자와 수탁자는 동일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설정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위법한 trust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인 신탁이 된다. 이러한 신탁의 요소는 ①신탁설정자(settlor), ②신탁설정의사, ③신탁의 목적, ④신탁재산, ⑤수탁자, ⑥수익자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sup>80)</sup> 그 요소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trust가 종료되든지 아니면 무효가 된다. 대상물이 독립된 상태이고 양도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기만 하면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또는 무형 등 어떠한 유형의 재산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sup>81)</sup>

조세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탁은 철회불능이므로 신탁설정자는 신탁을 철회할 수 없다. 사전에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즉 철회가능신탁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조세상의 혜택이 인정되지 않고 신탁설정자의 재산으로 취급된다.<sup>82)</sup> 그 결과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의 경우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위탁자에게 과세되며 신탁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탁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되는데, 신탁재단이 그 재단의 소득금액 전부를 수익자에게 분배하게 되면 당해 재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 사익신탁의 활용 사례

철회가능신탁이 설정된 경우 IRS는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조세 혜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탁을 설정할 실익이 별로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Probate Court(유언검인 절차를 실시하는

78)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 저/임채웅 역, 전계서, p.194

79) <http://www2s.biglobe.ne.jp/~yshr-mat/newpage22.htm> [2010.3.24 방문]

80)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 저/임채웅 역, 전계서 pp213-260

81) 상계서, p219

82) 철회할 수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의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양도인신탁(grantor trust)으로 취급된다.



법원)에 의한 검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속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중요한 다른 목적은 위탁자가 자산관리 능력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신탁이 활용되는 중요한 예로 첫째, 가족의 자산관리 능력에 불안이 있는 경우, 둘째 자산을 수세대에 걸쳐 유지해 가고 싶은 경우, 셋째 가족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의 청구 등 리스크로부터 지키고 싶은 경우, 넷째 택스 플래닝으로서의 이용, 다섯째 패밀리 컴퍼니를 유지해 가고 싶은 경우 등이 언급된다.<sup>83)</sup> 심지어 통일신탁법 제408조는 한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물(들)은 위탁자의 생존 중에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 신탁은 해당 동물의 사망이나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동물의 사망으로 종료한다.<sup>84)</sup>

### 3) 공익신탁의 활용 사례

통일신탁법 제405조 (a)항은, “공익신탁은 빈민구제, 교육 또는 종교의 진흥, 보건향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탁은 철회불능신탁이며, 신탁에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즉시 조세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익신탁은 이 글의 주요 주제이며 그 종류와 활용사례 등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있으므로 별항으로 설명한다.

#### (2) 공익신탁의 종류와 법률관계

미국법상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은 크게 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Charitable Lead Trust로 나눌 수 있다.

##### 1)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 ① 의의

CRT는 1969년 자선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기부 형태이다. 기부자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이나 채권(세금 면제 채권 포함) 기타 자산 등을 철회 불가능 조건으로 법적인 형태(legal entity)를 갖춘 수탁자(trustee)에게 기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탁자산의 운용 수익을 돌려받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잔여 자산은 재단에 귀속되는 형태이다. 수탁자는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제한되지 않는다.

83) <http://www2s.biglobe.ne.jp/~yshr-mat/newpage22.htm> [2010.3.24 방문]

84)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 저/임채웅 역, 전게서 p259

신탁기간을 특정인의 생애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신탁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지정 가능하다.

## ② 운용수익의 지급

기부자 또는 신탁문서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 지급액은 초기 신탁 자산가치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공익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선조직에 최종적으로 지급될 금액의 현재가치는 최소한 신탁에 이전된 자산의 시장가치의 10%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CRT의 경우 최소 \$100,00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신탁의 지급액은 기부자가 아닌 기부자의 친구·가족 등 기부자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지급될 수 있으며, 복수의 수익자 지정도 가능하다.

## ③ 종류

운용 수익의 지급방식에 따라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CRAT)와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CRUT)로 나뉜다. CRAT는 연금처럼 트러스트의 수익이 얼마든 애초 설정한 고정액을 받는 것이고, CRUT는 트러스트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형태이다. 고정액 지급방식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RUT가 더욱 인기가 높다. CRUT의 경우에는 약정된 지급비율과 신탁의 운용수익률과의 관계에서 그 차액을 원금에 산입하느냐 여부, 순소득만을 지급하느냐 여부, 순소득만을 지급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의 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로 더 세분화 될 수 있다. CRT 기간 동안 수익자가 매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 ④ CRT의 장점

CRT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규모에 맞춘 자선적 공제, 생활을 위한 소득 확보, 양도소득세 면제,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자들이 CRT를 통해 기부를 하는 중요한 경제적 동기는 자산의 유동화에 있다.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조금 혹은 전혀 내지 못하는 경우, 이를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하고 싶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CRT를 선택하게 된다. CRT는 비영리단체로 취급되어, 기부자가 CRT에 자산을 기부할 때 자본이득세는 면제되며, CRT가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CRT 만료 후 잔여분(Remainder)이 자선단체로 이전될 때에도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부자들이 CRT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세제혜택에 있다고 한다.

문헌상 CRT가 pooled income fund나 gift annuity보다 장점을 가진다고 표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a. 기부자가 수탁자(trustee)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부자 자신이 수탁자가 될 수 있음
- b. 비 자선단체 수익자(non-charitable beneficiary)가 하나 있다면 자선단체 또한 소득 수혜자(income beneficiary)가 될 수 있음
- c. 서류상 허가된다면 CRT는 원칙에 따라 자선단체에 원금을 분배할 수 있음
- d. 기부자가 급여 유형(type of payment)을 선택 가능(고정금액 또는 유동금액)
- e. 기부자가 급여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최초 기부금에 대한 비율로서 기술됨)
- f. 수탁자(trustee)는 기부자의 요구에 맞도록 투자 전략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성격을 조정할 수 있음
- g. 기부자는 급여의 빈도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월별, 분기별, 연도별 등)
- h. 기부자는 신탁 종료 시, 신탁 원금을 하나 이상의 자선단체에 분배되도록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i. 기부자는 자선단체를 변경하는 권한을 가짐

#### ⑤ CRT의 단점

CRT는 투자금 운용에 있어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지만, 소극적인 투자자(passive investor)로서의 활동만 할 수 있다. CRT는 직접 호텔이나 편의점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직접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을 경우 100% 소득세가 부과된다. 신탁의 설립자는 신탁의 운용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신탁운용자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CRT는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고위험주식, 채권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sup>85)</sup>

Trust의 운용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원금이 감소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CRUT보다 CRAT의 경우가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trust 운용을 통해 연금 지급액보다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면 이는 원금에 추가 소득분으로 더해지지만, 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이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 부족분을 원금에서 제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즉, trust의 운용은 시장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선단체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기부금액의 변동이 클 수 있다. 만일 시장 가치가 절하 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금액은 기관의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너무 높다면 트러스트는 종료(self-destruct)할 수 있다.

---

85) IRC §1361(c)

CRT와 설립자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즉 자기거래는 금지된다.<sup>86)</sup> 예컨대 신탁설립자가 신탁에 자기의 집을 양도하고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거래는 불법으로 금지된다.

## 2) Charitable Lead Trust

### ① 의의

CLT는 CRT와 반대로, 기부자는 신탁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먼저 세금공제효과를 얻고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일정기간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였다가, 그 기간 종료 후 그 잔여 재산을 수익자 즉 기부자의 가족이나 기부자에게 귀속시키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부자의 재산을 최종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상속인에게 세금 이연 또는 감세의 형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특히 현재 재산적 가치는 적으나 향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재산에 유용하다. CRT와는 다르게 CLT는 소득(자산운용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특정인의 생애 또는 최대 20년까지 존속기간이 인정되는 CRT에 비해 CLT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부자는 CLT에 이전한 자산의 내역을 몇 개의 양식에 따라 신고(file)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만약 CLT가 grantor or super CLT인 경우로서 대부분이 비현금자산인 경우에는 Form 8283 양식에 따라, 비현금기부내역은 기부자의 Form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CLT는 매년 Form 5227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② 운용수익의 지급

신탁은 매년 일정 금액(payments)을 지정된 자선단체에 지급한다.<sup>87)</sup> Grantor CLT의 경우 운용 소득세를 설립자가 납부하며 CLT에서 자선단체로 매년 지급되는 액수에 대해 설립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Non-Grantor CLT의 경우 설립자가 아닌 CLT가 투자소득세를 납부하며, 설립자가 아닌 CLT가 자선단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CLT는 자선단체로 간주되지 않아 특별한 투자계약이 없으므로 식당이나 호텔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소득에 대해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Debt Financed Property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통상의 소득세가 과세된다.<sup>88)</sup>

86) IRC §4947(a)(2)

87) Like a CRT, a CLT comes in two flavors: a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 (CLAT) and a Charitable Lead Unit Trust (CLUT). A CLAT pays a fixed amount each year to your charity while a CLUT pays a fixed percentage of the trust assets each year to your charity(Article Source: <http://EzineArticles.com/4595315>)

88) .....Unlike a CRT, a CLT is not a tax exempt trust. This means that all income earned by the CLT is taxable to the Grantor (you) each year. The benefits of a CLT include a current year charitable

CRT 특히 CRUT의 경우 신탁자산보유액의 최소 5% 최대 50%를 매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sup>89)</sup> CLT는 그러한 지급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CLT의 존속기간 중 자선단체에 지급되는 총액의 금액이 신탁자산가치의 10% 이상이어야 CLT로 인정된다.

### ③ 종류

CLT는 I.R.S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인 신탁규정(grantor trust rules) 하에서 기부자가 신탁(trust)의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Qualified와 Non-qualified Lead Trust로 나눌 수 있다. Qualified Lead trust만이, 기부자는 기부금 및 재산세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분류는 Grantor와 Non-grantor Lead Trust로 나누는 것이다. 양도인 신탁 규정(grantor trust rules) 하에서 기부자가 신탁(trust)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grantor trust로 분류되며, 기부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 신탁은 non-grantor trust로 분류된다.

Grantor CLT의 경우 신탁 만료 후 잔여 재산이 설립자에게 상환되는 형태이며,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 CLT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잔여 지분의 5% 이상을 기부자를 위해 남겨 놓는 grantor CLT이다(IRC §673(a)).

신탁 만료 후 남아 있는 자산이 설립자의 상속인에게 상환되는 형태가 Non-grantor Lead Trust인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며, Non-grantor Lead Trust는 비영리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CLT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매년 발생할 때마다 고려되지만,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은 IRC §642(c)에 의하여 제한없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에게 상환되는 재산에 대해 자산세를 내지 않으나, CLT 설립 시점에 신탁 만료 후 상속인에게 상환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의 현재가치에 대해 설립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상환되는 재산의 가치가 상환 예측재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 예컨대 현재 가치는 작지만 장래 가치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상속인이 면세 혜택을 보게 된다.<sup>90)</sup>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형태는 Non-grantor Lead Trust라고 판단된다. 한편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3의 형태로 양자를 결합한 Super CLT도 있으나 Internal Revenue Code §2511(c)에 의해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

contribution deduction, a reduction in your estate tax and appreciation of trusts assets outside your estate(Article Source: <http://EzineArticles.com/4595315>)

89) IRC §§664(d)(1)(A), 664(d)(2)(A)

90)순전히 재무 계획 관점에서 볼 때 자본양도세(예 : 부동산 세금, 증여세 등)가 제거된다면, 재무적 관점에서의 CLT의 장점 역시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 ④ CLT의 장점

CLT는 기부자 또는 상속인에게 감세된 형태로 기부 자산이 반환된다는 점에서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CLT의 경우 기부자는 신탁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세금공제 효과를 얻고 일정기간 기부를 하였다가, 결국에는 기부자의 가족이나 기부자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 이는 기부자의 재산을 최종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상속인에게 감세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생에 걸쳐 현금 기부를 할 수 있는데서 오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선단체 측면에서는, Trust는 CGA보다 기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⑤ CLT의 단점

CLT는 원금의 대부분이 기부자(상속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부자는 신탁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세금공제 효과를 얻고 일정기간 기부를 하였다가, 결국에는 기부자의 가족이나 기부자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 이는 기부자의 재산을 최종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상속인에게 감세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부자에게는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감세된 형태로 부의 이전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CLT의 경우에도 IRC §4947(a)(2)에 따라 자기거래는 금지된다.

## 2. 미국의 공익신탁 활용 사례

미국에서는 CRT나 CLT를 활용하여 생활보장과 기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들은 미국의 문헌 등에서 실제로 소개되는 것들이다.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사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례 1

**: 일시적이면서 지속적인 기금(Endowment)를 조성하기 위해 Charitable Lead Trust 와 Charitable Remainder Trusts를 결합한 사례**

CRT와 CLT는 다양한 계획기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례는, CRT와 CLT를 결합하여 매년 자선단체에게 기부금 전달, 대규모의 기금 조성, 상속세 이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이다.

## 1) 사실관계

78세의 Charles Swenson 씨는 자식이 없고, 아내와는 사별했다. 1000만 달러를 기부하면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건물에 본인과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하다.

## 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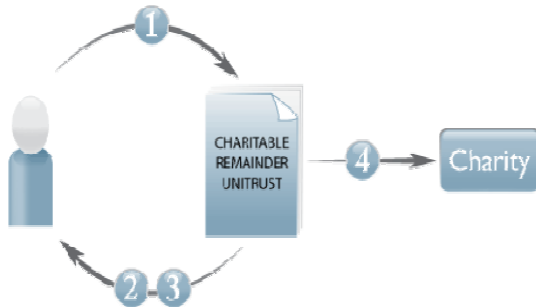
계획기부의 일부로, 조카의 딸과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려 한다.

## 3) 해결책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와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의 동시 설립

### ① The Remainder Trust

전문가와 의논한 끝에 찰스씨는 (1)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에 1000만 달러를 이전하기로 했다. (2) 해당 신탁은 매년 자산 총액의 5%를 찰스씨에게 지급할 것이며, 신탁의 존속기간은 사망 시점까지이다. 그가 신탁 조성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생존 할 경우, 20년 동안만 돈이 지급된다. 즉, 신탁의 최대 지속기간은 20년이다. 이로서 그는 최대 20년 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자선단체는 적어도 20년 뒤에는 신탁자산의 나머지 (remainder)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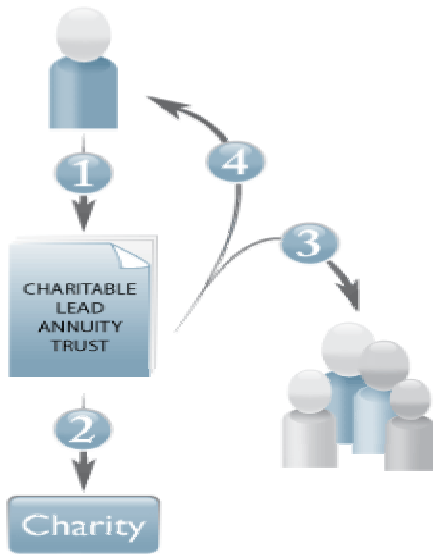
찰스씨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신탁에 맡겼다. 신탁은 그 채권을 양도할 것이고, 이전에 찰스씨의 투자에 도움을 줬던 이들에 의해 재투자 될 것이다. 만약 신탁이 8% 수익을 내고 기부자가 10년을 더 생존한다면 ('10년'이 찰스씨의 기대 수명이다), 기부자의 소득은 첫째 50만 달러에서 10년 뒤 대략 67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고,<sup>91)</sup> (3) 찰스씨는 신탁 설립 시점에 그의 사후 자선기부 뭉에 대해, 650만 달러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자선기관은 1300 만 달러를 기부자 사후에 수령하게 된다.<sup>92)</sup>

91) 신탁에서 8% 수익을 내고 5%만 지급하므로, 원금 1,000만 달러에 30만 달러가 원금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의 5%는 10년 후 67만 달러가 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92) 원금 1,000만 달러에다가 매년 3%씩 원금에 추가하여 10년 말 현재의 금액이 된다.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 ② The Lead Trust

찰스씨는 Unitrust를 설립함과 동시에, (1) 다른 1000만 달러를 위탁해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를 설립하고, (2) 매년 자선단체에 신탁기금의 8%, 즉 80만 달러를 20년간 지급한다. 20년 후, (3) Lead Trust 의 잔액은 그의 조카의 아들·딸에게 이전된다.



찰스씨는 1000만 달러의 상속에 대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4) 1000만 달러에 대한 자선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자선단체는 Lead Trust를 통해 그들에게 20년 간 매년 지급되는 80만 달러를 “Temporary Endowment (일시 기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건물의 이름을 찰스씨의 이름을 따서 지어 준다. 만약 자선단체가 ‘매년 기금의 5%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찰스씨의 일시기금의 총액이 1600만 달러인 것과 같게 된다(1600만 달러의 5% = 80만 달러).

## ③ 결합의 기대 효과

만약 기부자가 그의 기대수명인 10년을 생존 한다면, 자선단체는 기부자의 사후 1300만 달러를 Unitrust의 Remainder로 수령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Unitrust는 20년 이내에 만료되고 자선단체는 20년 내에 remainder를 수령할 수 있다.<sup>93)</sup>

650만 달러가 된다.

93) CRT는 최대 20년을 넘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찰스씨가 98세 까지 생존하고 Unitrust 가 20년간 지속되어 그것의 만료시점이 Lead trust의 만료시점과 같아진다면, Lead Trust에 해당하는 Temporary Endowment (일시기금)이 Unitrust의 Remainder에 해당하는 “Permanent endowment (영구기금)”으로 대체된다. 이때, Unitrust 의 잔액은 1800만 달러<sup>94)</sup>가 조금 넘을 것이다. 기금의 5%를 매년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 하에서 자선단체는 매년 90만 달러<sup>95)</sup>를 수령 할 수 있고 이는 Lead Trust의 연간 지급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찰스씨의 기대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Unitrust가 Lead Trust (지속기간 20년)보다 10년 정도 먼저 만료 될 것이다. Unitrust 만료시점부터 Lead Trust 의 만료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단체는 Lead Trust와 Unitrust의 Remainder, 두 곳 모두로부터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찰스씨는 두 신탁 모두의 운용을 그의 기존 자산운용가들에게 맡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찰스씨, 단체, 상속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체는 ‘매년 Lead Trust 로 부터 20년간 고정적으로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상속 자산 운용의 위험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모금의 관점에서 보면, 단체는 1600만 달러에 대한 ‘서약’ - 매년 80만 달러 20년간 지급 - 을 대가로 건물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더불어 Unitrust Remainder 에 해당하는 수 백만 달러의 영구기금을 약속 받는다. Unitrust Remainder는 기부자의 사후에, 기부자가 20년 이상 생존할 시에는 20년 뒤에 지급 될 것이다.

## (2) 사례 2

: Charitable Lead Trust를 이용해 개인의 다양한 계획기부 목표 충족

### 1) 사실관계

49세의 톰 잭슨 (Tom Jackson)씨는 최근 이혼했다. 그에게는 두 아이 - 14살, 16살-가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하는 보육비(Child Support)만으로도 두 아이를 충분히 부양 할 수 있다. 그래서 잭슨씨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녀들이 사회/경제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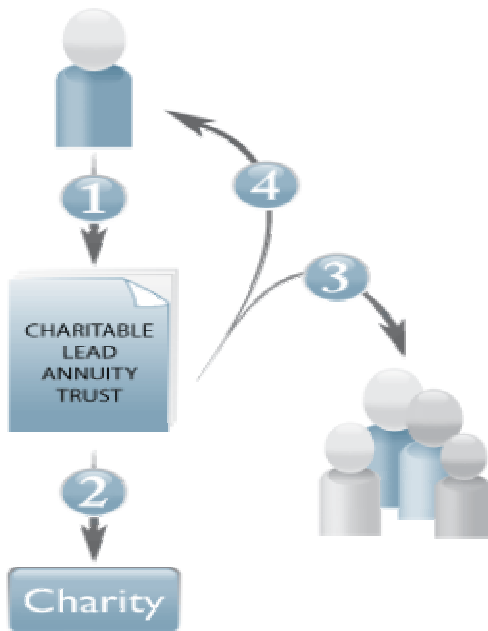
94)  $1,000\text{만달러} \times 1.03^{20} = 1,806.112\text{만달러}$  ( ∵ 8% 수익에서 5%는 배분을 해야하므로 매년 3%씩 기금이 증가할 수 있음)

95)  $1806.112\text{만달러} \times 5\% = 90.3056\text{만달러}$

를 부여해 줄 것이다. 잭슨씨는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상속해 주고 싶어한다. 외동 아들이었던 잭슨씨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이를 잘 관리해 왔다. 이혼 후 1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잭슨씨는 거액모금캠페인 약속의 일환으로 모교의 학과장에 대한 후원을 권유받았다. 이를 위해 매년 75,000 달러가 필요하다.

## 2) 해결책

200만 달러를 위탁해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 를 설립한다. 해당 신탁은 매년 7.5 %, 즉 (2) 150,000 달러를 17년간 지급한다. 연간 지급금의 절반인 75,000 달러는 학과장에게 바로 지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학과 학과장을 위한 연구 기금으로 적립된다.



신탁이 매년 7.5 %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하였다면, 17년 뒤 두 자녀는 각각 1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만약 신탁이 더 적은 수익을 내면, 자녀들은 더 적게 상속한다. 만약 신탁이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자녀들은 초과분에 대해 추가유산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 자녀들이 신탁 만료 후 가치가 오른 자산을 받게 된다면, 그 자산은 신탁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같은 basis를 지닌다.

해당 Lead신탁은 매년 15만 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잭슨씨의 지시대로, 지급금의 절반은 학과장에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3%를 지불하고 4.5%씩 불어나는 endowment fund로 설정된다면, 결과 아래와 같다:

이 계획기부의 결과로, 잭슨씨는 17년 동안 127만 5천 달러를 대학에 직접 기부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 혹은 50% 공제제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1,275,000)이 기금에 적립되고, 이는 17년 동안 1,939,131달러로 증가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기금은 \$442,754를 배분한다. 신탁 만료 후 (17년 후), 해당 대학이 기금액 사용률 (spend rate)을 3.9%로 상향조정한다면, 이는 Lead Trust 만료 후 중단되는 연간 지급금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기금의 수익금이 Lead Trust 의 연간 지급금 (75,000 달러)를 대체하는데 사용되고, 기금 수익금의 나머지가 원금에 적립된다면, 기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과장에게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End of Year	Contribution	3% Earnings	4.5% Growth	Annual Payout of 3%	Balance
1	75,000	2,250	3,375	2,250	78,375
2	75,000	4,601	6,902	4,601	160,277
3	75,000	7,058	10,587	7,058	245,864
4	75,000	9,626	14,439	9,626	335,303
5	75,000	12,309	18,464	12,309	428,767
6	75,000	15,113	22,670	15,113	526,436
7	75,000	18,043	27,065	18,043	628,501
8	75,000	21,105	31,658	21,105	735,159
9	75,000	24,305	36,457	24,305	846,616
10	75,000	27,648	41,473	27,648	963,088
11	75,000	31,143	46,714	31,143	1,084,802
12	75,000	34,794	52,191	34,794	1,211,993
13	75,000	38,610	57,915	38,610	1,344,908
14	75,000	42,597	63,896	42,597	1,483,804
15	75,000	46,764	70,146	46,764	1,628,950
16	75,000	51,119	76,678	51,119	1,780,628
17	75,000	55,669	83,503	55,669	1,939,131
<b>Total</b>	<b>1,275,000</b>			<b>442,754</b>	

잭슨씨는 신탁 설립 시점에 200만 달러를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교적 낮은 연방할인율 (증여 시점 2.4%)를 고려했을 때, 자선 신탁 공제액이 200만 달러를 살짝 넘게 되고, 잭슨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논쟁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잭슨씨와 자녀들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가 기부를 했을 때 보다 재정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계획기부를 시행했을 때, 잭슨씨는 대학에 상당량의 기부를 함과 동시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삼십대 초반이 됐을 때 꽤나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

잭슨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유하던 채권 자산을 유통화 한 뒤, Charitable Lead Trust를 설립할 만한 상당량의 현금을 지니고 있다. 다

른 경우의 이들은 가치가 많이 오른, 그러나 수익률이 낮은 (혹은 전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산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그 자산을 이용해 Lead Trust를 설립할 경우,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쉬운 점이 없다.

덧붙여,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Lead Trust 로 이전하여 일부의 자산에 대하여 15%의 자산 이전세만 내는 것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고 자산 전부에 대해 45%의 세금을 내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 (3) 사례 3

#### : Charitable Lead Trust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민간재단 설립하기

계획기부를 고려하는 자선가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선단체에 즉각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족 구성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증여세, 유산세의 불확실성/변동성에 대해 걱정하는 한 부부가 어떻게 Non-grantor Charitable Lead Trust를 “일시적인” 민간 재단의 역할을 하도록 이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 1) 사실관계

연방 상속세에 변화가 생기자, Fischer 부부 - 남편 59세, 아내 57세 - 는 그들의 자산계획을 재고하기로 결정했다. 몇 해 전과 달리, 부부는 연방 유산세가 완전히 폐지될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연방 상속세가 폐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험을 듣고 싶어한다.

Mr. Fischer씨는 20대에 천연자원 회사에 입사한 후 회장자리 까지 오른 인물이다. 작년, 더 큰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이끈 뒤 은퇴하였다. 피셔부부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산이 있다. 연 소득은 50만 달러 정도이며, 더 이상의 소득은 필요하지 않다. 부부는 25, 27세의 두 자녀가 있고 두 자녀 모두 공부를 마친 후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에게는 손자가 세 명 있다.

#### 2) 목표

재테크 조언자들은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상속세의 규모는 사망 년도, 상속세 관련 미래의 의회 활동, 자산의 증가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 피셔 부부는 상속세가 현시점과 2010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2010년 완전히 폐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양도세는 폐지될 계획이 전혀 없고, 생전에 각각 100만 달러 밖에 면세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속세가 전면 폐지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부부는 생존기간 중 양도세 없이 각각 100만달러 (총 200만 달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하려 한다.

피셔씨는 자신이 일생 동안 일군 재산을 연방정부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는 재산이 일생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녀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자녀가 “쉬운 길”만 걷도록 하고 싶진 않다. 피셔씨 부부는 자녀와 손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계획기부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피셔씨 부부는 한 자선프로그램을 통해 Charitable Remainder Trust에 관한 정보를 접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의 소득이 필요 없고, 추가적인 소득은 소득세와 자산세 부담만 지을 것이라는 이유로 Remainder Trust를 이용하기를 거절했다.

### 3) 가능한 해결책

#### Charitable Lead Trust와 재단 설립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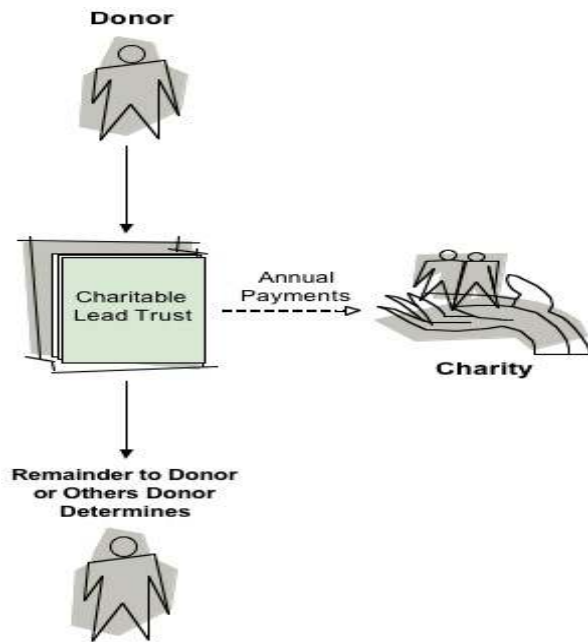
한 조언가 그룹은 민간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 점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피셔씨 부부를 설득했다. 그들의 사망시점에 그들이 보유하고 자산의 상당부분은 유언과 신탁을 통해 재단으로 이전될 것이다.

부부는 생존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재단의 이사로 활동할 것이다. 부부의 사후에는 상속자가 계속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다. 자녀는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보수를 수령할 수 있고, 수백, 수천 달러의 자선기부액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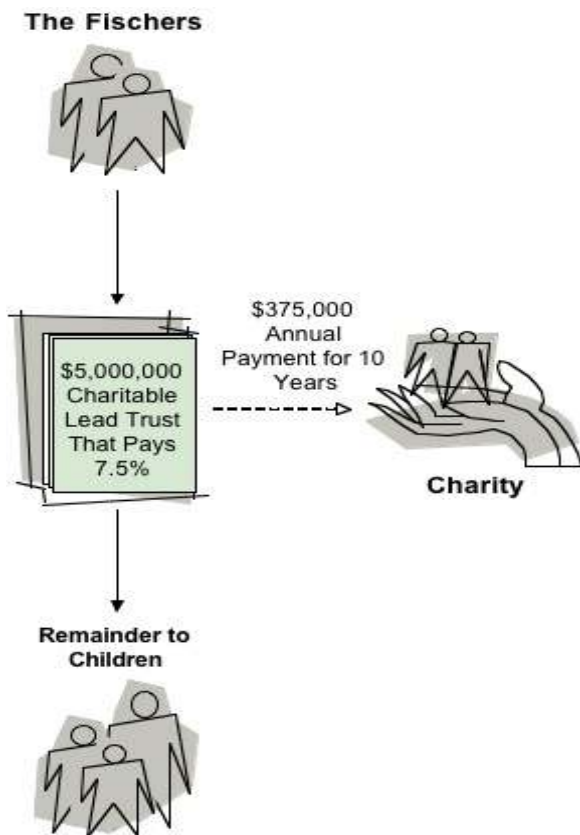
이 계획을 실현하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자녀의 상속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아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도 그들은 몰수와 마찬가지로 자산세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 중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피셔 부인은 Charitable Lead Trust 의 장점을 소개한 기사를 읽었다. 부부는 CLT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CLT는 본질적으로 CRT 의 반대이다. 자산이 신탁에 이전되고, 신탁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자선단체에 돈을 지급한다. 신탁기금은 신탁 만료 후 기부자나 그의 상속자에게로 돌아온다. CLT 는 자선신탁이기에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피셔씨 부부가 500만 달러를 가지고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 를 설립했다고 하자. 이 신탁은 매년 8%, 즉 4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10년 동안 기부할 것이다.



피셔씨 부부는 신탁이 조성되는 해,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생전에 200만 달러까지 양도세 없이 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500만 달러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는 '200만 달러 공제 혜택'이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신탁의 수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 뒤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상속세 없이 증여 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이미 200만 달러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받은 후라면, 신탁을 19년간 운영하면 된다. 과세해당 없음.)

피셔씨 부부는 신탁이 자선단체 프로그램 후원금으로 매년 175,000 달러를 지급하고, 20만 달러를 적립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적립기금이 매년 적립액의 4% 사용, 8% 수익률을 올린다고 하자. 이 경우, 신탁이 만료되는 시점인 10년 뒤 적립기금은 신탁이 매년 자선단체에 지급했던 돈을 영구적으로 대신 지불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End of Year	Contribution to Permanent Fund	8% Total Return	4% Annual Payout	Permanent Fund Balance
1	\$200,000	\$16,000	\$8,640	\$207,360
2	\$200,000	\$32,589	\$17,598	\$422,351
3	\$200,000	\$49,788	\$26,886	\$645,253
4	\$200,000	\$67,620	\$36,515	\$876,359
5	\$200,000	\$86,109	\$46,499	\$1,115,969
6	\$200,000	\$105,277	\$56,850	\$1,364,396
7	\$200,000	\$125,152	\$67,582	\$1,621,966
8	\$200,000	\$145,757	\$78,709	\$1,889,014
9	\$200,000	\$167,121	\$90,245	\$2,165,890
10	\$200,000	\$189,271	\$102,206	\$2,452,955
<b>Total</b>	<b>\$2,000,000</b>		<b>\$531,730</b>	<b>\$2,452,955</b>

#### 4) 기대 효과

계획기부의 결과, 자선단체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백 75만 달러의 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부부는 10년 뒤, 자녀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500만 달러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의 계획기부는 “일시적”으로만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들은 자선 의도를 수행하고, 잠재적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 경우, CLT는 “일시적 민간재단”처럼 작용하였다. “일시적 민간재단”은 영구적으로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고도, 민간재단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피셔씨 부

부는 다른 Lead Trust를 몇 년 안에 설립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4) 사례 4  
: 골치덩이 자산을 처리하는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70대 초반인 윌슨씨 부부는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수익률은 낮은 골치덩어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를 이용하여 어떻게 세금없이 주식을 처분하고, 소득세 공제를 받으며, 생전에는 고정적인 소득을 얻고, 사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 사실관계

윌터 윌슨씨와 헬렌 윌슨씨 부부는 그의 변호사 프랭크 리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치덩어리 주식에 대해 상담했다. 윌터씨 (74세) 와 헬렌씨 (72세)는 얼마 전 결혼 52주년을 맞이 하였다. 훌륭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자녀가 없었다. 둘 다 이전에는 자기 일을 했다. 헬렌씨는 상당히 큰 담배 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비용부담 없이 회사의 주식 3,468주를 가지게 되었다. 주주배당금은 적고,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 이득세는 크다.

2) 목표

지난 몇 년간 헬렌씨는 담배가 해롭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회사는 그동안 사업을 다양화 시켰지만, 헬렌씨는 여전히 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었다. “만약 우리가 주식을 판다면, 우리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윌터씨가 말했다.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저는 주식을 처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본이득세를 내고 싶지는 않아요. 이 골치덩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죠?” 헬렌씨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3) 해결책

변호사 리씨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헬렌씨가 훌륭한 대학교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골치덩어리 주식의 현재 가치는 151,292 달러 정도 이다. “만약 헬렌씨가 ‘공짜’로 획득하신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 이는 전액 자본 이득으로 간주 될 것이고,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산을 CRUT에 집어 넣으실 경우,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선신탁은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변호사 리씨는 이어서 말했다. “두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매년 두분에게 신탁자산의 정해진 비율만큼의 돈이 지급될 것 입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신탁에 남아 있는 자산이 헬렌씨의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될 것입니다. 두 분에게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신탁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재투자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지급금은 주로 신탁의 보통 소득과 자본이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두 분이 매년 받을 지급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년 신탁이 부부에게 지급하기로 한 6%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때, 이 초과분은 다시 과세없이 적립되어 다음 년도에 부부께서 더 큰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피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윌슨씨 부부는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 만료 후, 자선단체가 신탁의 남은 자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 기부의 현재가치만큼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와! 골치덩이 주식을 처분하고,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매년 소득을 얻고, 우리가 죽은 뒤, 남은 자산은 제 학교에 장학금으로 가고, 신탁 설립 시점에 공제를 받고,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죠?” 헬렌이 말했다.

변호사 리씨는 신탁을 설립할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했다. 윌슨씨 부부는 신탁의 운용자를 선정하고, 연간 지급금의 비율을 정하고, 대학교가 신탁의 나머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께서는 신탁이 매년 7%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리씨가 말했다. “저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좀더 낮은 퍼센트를 원합니다.” 윌슨씨가 말했다. 변호사 리씨는 자신이 직접 투자수익률을 추산해보고, 합당한 지급금 퍼센트를 부부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부부는 동의했다.

“신탁 문서에는 신탁운용자의 이름, 연간 지급금 비율, 나머지 자산을 지급받을 자선단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고, 다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죠.”

#### 4) 기대 효과

부부는 헬렌씨의 ‘공짜로 얻은’ 담배회사 주식을 6% 지급 약속한 Unitrust에 이전했다. 신탁이 시장가치가 151,292 달러인 주식을 처분할 때, 부부는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61,659 달러다. 윌슨씨 부부의 기대수명인 19.3년 동안, 부부는 173,048 달러를 지급받을 것이라 추산된다. 만약 신탁이 매년 적어도 6%의 수익을 올린다면, 헬렌씨의 대학교는 15만 달러 이상을 윌슨 부부 이름의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윌슨씨 부부의 “골치덩어리 자산”은 매우 유용한 자산으로 변신한 것이다.

### 3.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공익신탁과 관련한 미국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법적인 과제들이 있다. 첫째로는 우리 법 체계상 미국법과 같은 형식의 신탁 설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배타성, 신탁재단의 법적 실체성,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신탁설정이 가능하다면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즉 사익신탁과 공익신탁의 결합에 대한 것이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또한 공익신탁법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시행 전 또는 입법 전의 법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탁 설정의 가능성도 현행법에 의한 경우, 개정 신탁법 및 공익신탁법에 의한 경우로 분류하여 논하기로 한다.

#### (1) 현행법상 신탁 설정의 가능성 판단

##### 1) 미국 신탁제도와와의 비교

우리 법 체계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신탁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법과 같은 형태의 신탁 설정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i)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 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의 배타성과 모순된다거나, ii)신탁재단의 법적 실체성(법인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과 모순된다거나, iii)우리 법상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등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례와 같은 형식의 신탁을 설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먼저 소유권의 배타성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미국법상의 신탁은 하나의 물건에 각각 독립한 legal right와 equitable right가 이중으로 성립하는 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우리 민법 특히 물권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의 배타성, 절대성, 一物一權성과 모순된다.<sup>96)</sup> 대법원 판례도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어,<sup>97)</sup> 미국법상의 신탁과 다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영미의 논의를 대륙법계 차원의 의미에서의 채권적 관계인가 물권적 관계인가에 대한 논의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96) 水野紀子(<http://www.law.tohoku.ac.jp/~parenair/shintakuhou-kaisei.html>) [2010.3.24 방문]

97)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있다는 견해를 고려하면,<sup>98)</sup> 신탁관계의 결과 수익자는 긍정적인 권리를 얻고 수탁자는 부정적인 권리를 얻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수탁자는 권리를 이전받는 대가로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물건에 각각 독립한 legal right와 equitable right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법상의 신탁과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신탁재단을 법적 실체로 보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 미국의 경우 신탁을 법적 실체(entity)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가 아닌 계약관계로 보고 있어 모순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신탁법 제21조), 수탁자에게는 분별 관리의무가 인정되며(동법 제30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고(동법 제20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또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 특히 유언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 즉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로 해석하고 있다. 유언자유 원칙을 취하고 있는 영미법도 유언자유 폐해가 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족적인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큰 폭으로 수정하는 재량권을 입법적으로 주어 왔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대륙법은 그에 따라 유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근 개정되어 2012. 7.26.부터 시행될 신탁법상의 유언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컨대 재산의 소유자가 신탁을 설정해 배우자의 생존 중에는 배우자만을 수익자로 하고,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아이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sup>99)</sup>에는 아이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신탁제도는 이 경우 유류분 제도와 융화(相容)되지 않는다. 또한 예컨대 뉴욕주법은 신탁을 설정한 시점에서 살아 있던 설정자 유족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21년 뒤까지 신탁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유언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의 마지막 손자가 사망한 후 21년까지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면, 아마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0년 정도까지는 설정자의 재산상의 권리의 완전성은 회복하지 않게 된

98)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p198 각주 6) 참조

99)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2004), p11

다. 이러한 결과는 대륙법에 입각한 현재의 민법 체계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익신탁의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넘는 신탁설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고, 또 유류분권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선잔여신탁(CRT) 등의 도입 여부는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신탁 설정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의 문제는 자산 전체를 신탁하지 않는 한, 그리고 최소한 사망 1년 전에 행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계산시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안 경우에만 1년 전의 증여도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의 신탁과 다른 점이 있으나 우리 법 체계에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적어도 미국법과 같은 형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법에서와 같은 조세 혜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있게 된다. 사익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RT나 CLT와 같이 사익신탁과 공익신탁이 결합한 상황에서는 조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탁을 설정할 때 재산의 이전이 있게 되고, 자산의 운용 및 신탁의 종료시에 위탁자나 수익자 또는 공익단체에 역시 재산의 이전이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어떻게 얼마나 주는가 하는 점이 초점이 될 것이다.

## 2) 공익신탁(CRT, CLT) 사례의 적용가능성

### ① CRT의 적용가능성 판단

#### - 신탁법

현행 신탁법상으로 CRT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까. 신탁법 제29조 및 신탁법 개정안 제36조는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라는 제호 아래,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00)</sup> 이 규정에 따르면 신탁법상 공익법인 또는 학교재단만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형식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익법인 또는 학교재단 이외의 다른 공익법정도 수익자로 추가하여 복수의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결론이 된다.<sup>101)</sup>

100) 미국의 통일신탁법 제402조 (a)(5항)에서도 유일한 수탁자가 유일한 수탁자가 되는 경우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譯), 「미국신탁법」, 박영사(2011), 231면).

101) 같은 취지 홍유석, 「신탁법」(전정판), 법문사(1999), 130-131면

미국의 통일신탁법 402조 (a)(5)항은 동일인이 유일한 수탁자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신탁법과 같은 결과가 된다. 수탁자는 위탁자일 수 있고 수익자일 수도 있으며 둘 다를 겸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경우만은 허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커먼로상의 권원 및 형평법상의 권원이 통합되기 때문이다.<sup>102)</sup>

또한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가 신탁위반을 하더라도 타수익자가 이행을 강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므로,<sup>103)</sup>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위 규정 자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의 신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수탁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면서 신탁법 제66조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에 실제적인 수익자를 적절히 소명할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CRT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 세법

CRT의 경우에는 세법상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CRT의 경우에는 세법에 일부 형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회환원기부신탁으로 불리었으며, 신탁자가 사망할 때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을 설정했으면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으로 간주,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신탁수익을 지급할 때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했다.<sup>104)</sup>

즉 구(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동조 동항 제11호에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을 규정하였다.

동법(同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신탁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1호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102) 임채웅 역, 전계서, p231면

103) 홍유석, 상계서, 131면

104) 조세일보 2007.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호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호 :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호 : 금전으로 신탁할 것

미국의 CRT와 비교하면, 철회불능조건의 신탁이라는 점, 신탁의 설정 당시에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 혜택을 주었다는 점 등은 CRT와 같았다. 그러나 금전 신탁으로 제한한 점,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신탁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만 조세 혜택을 준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회환원기부신탁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거의 없었다. 사회환원기부신탁은 기부금의 종류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3 종류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는 2010.12.27 세법 개정(시행일 2011.7.1)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3호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공익신탁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으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서 공익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법인세법 제51조). 이러한 세제지원은 CRT의 경우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나 자산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또 공익신탁의 운용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차이는 다음에 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탁에 대한 남용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이 CRT나 CLT를 도입하는 경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은 공익법인에 귀속되고 신탁재산의 일부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은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항상 맞는지는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위탁자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최소한의 재산이나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재산을 모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이 공익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것을 이유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정 금액 한도를 두어 위탁자와 수익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계획기부의 차원에서 기부가 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신탁시점에 기부자에게 기부 전액에 따른 세제혜택을 허용하고, 수익자가 기부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때에 이를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부자나 기부자의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일정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하면서도 완전한 과세면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종전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개인에 한정하여,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1억 이상을 기부하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기부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협의된 고정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CRT를 도입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었으나,<sup>105)</sup> 기부 재산의 몇 %까지를 수익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전액 기부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

미국법상으로 CRT의 경우 자선단체에 최종적으로 지급될 금액의 현재가치는 최소한 신탁에 이전된 자산의 시장가치의 10%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CRT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고액자산가들일 것이므로 과도한 조세 혜택은 조세회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보장 등 설득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비율은 정책판단의 문제일 것이나, 기부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받는 수익이 5% 정도라면 인정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② CLT의 적용가능성 판단

### - 신탁법

신탁계약으로 CRT가 인정된다면 CLT도 인정될 수 있다.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임무로서 수익자에게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잔여분을 공익법인에 지급하는 것이나 또는 공익법인에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잔여분을 수익자(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CLT의 경우에는 신탁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제외하고는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우편저금, 은행예금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신탁법 제35조), 특별한 투자 제약이 없는 CLT와는 다르게 된다. 이 점에서는 미국법과 같은 형식의 CLT의

105) 이진오/임규진/황보은, 전제 보고서, pp53-57

도입은 곤란하다는 결과가 된다.

또 다른 제약은 “수탁자는 영업으로써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신탁법 제41조의 경우이다. 보수의 특약은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도 정할 수 있으며, 보수의 지급의무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생전신탁의 경우 위탁자, 유언신탁의 경우 신탁재산 자체 또는 상속인이 지급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한다.<sup>106)</sup> 신탁법 제29조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탁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탁자는 보수도 없고 신탁의 이익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의 신탁행위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는데(신탁법 제66조), 공익신탁의 수탁자에게는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익신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미국 통일신탁법 제709조는 수탁자가 적절한 이자와 함께 신탁재산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보수는 계약, 신탁조항, 법령에 의한 보수 규정 또는 법원의 신탁에 대한 감독에 의해 정해진다. 기준은 신탁계약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탁에 관한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보수기준이 실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탁에 관한 계약에서 보수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이 수탁자에 의하여 지나치게 설정된 것이거나 신탁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변화와 같은 변경을 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기준은 준수된다.<sup>107)</sup> 수탁자가 부담하는 여러 의무를 고려한다면, 특약이 없더라도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 세법

CLT의 경우에는 출연한 재산에 대해 먼저 자선단체에 지출하고 잔여분을 수익자(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형태인데, CRT와 기부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미국법상 CLT 자체는 자선단체로 간주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10% 이상 기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Qualified nongrantor Trust)에는 트러스트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인정될 뿐 다른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도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부자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Qualified grantor Trust)에는 현재 시점에서 신탁설정 및 기부에 대한 세제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sup>108)</sup> 기부금에 대하여 현금주의에 따라 공제시기를 인정하는 현행 세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잔여분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신탁 설정시에 신탁설정자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환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106) 홍유석, 전계서, 149면

107) 임채웅 역, 전계서, pp335-336면

108) <표 12> 자선선행신탁(CLT)의 유형 및 특징 참조



은 자산세를 내지 않는 점도 우리 세법과 부합하지 않는다.<sup>109)</sup> CLT 설립자는 수익자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설립한 Private Foundation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CRT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세법상으로는 추정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3) 소결

CRT와 같은 방식의 기부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3호의 방식을 쫓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즉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신탁법상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국채, 예금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정기금 형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 후, 신탁 종료시에 공익단체에 기부되는 것으로 신탁약정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3호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부금의 공제시기에 있다. 미국법상의 CRT는 설립 시점에서 신탁 종료 시의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주의를 취하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실제 공익단체에 기부된 때, 예컨대 신탁 설정 후 10년 후 사망한다면 10년 후에 기부금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CLT의 경우에도 재산관리 방법상의 제약을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도 동일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신탁법상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국채, 예금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정기금 형식으로 공익단체에 지급한 후, 신탁 종료시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신탁약정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역시 문제는 공제시기의 차이에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 ① 사례 1 (Charitable Lead Trust 와 Charitable Remainder Trusts를 결합) 및 사례 4 (골치덩이 자산을 처리하는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먼저 CRT를 설립하여 사례와 같은 “생활보장+기부”를 하는 것은 신탁법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신탁에 공익과 사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신탁법상의 공익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으로만 인정된다면, 상증세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신탁 자산의 운용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있고, 이 점에서는 기부자가 신탁설립 시점에서 자산이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고 CRT를 면세단체로 인정하는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제는 CRT로부터 받는 5%의 생활보장 부분에 있다.

109) 미국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기 때문인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중대한 차이이다.

우리 법은 이 경우 무조건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상증세법 16조 3항). 따라서 예컨대 공익신탁으로부터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개정을 하여야만 CRT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3호는 공익신탁의 여부를 묻지 않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사망시에 공익법인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기부금의 공제시기에 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신탁 설립시에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현금주의를 취하여 실제 기부시를 기준으로 공제를 인정하므로 이 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역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사례 4)와 같은 형태로 CRT를 활용하는 것은 현재 인정되기 어렵다. 주식도 신탁법상의 공익신탁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전 사회환원기부신탁도 금전신탁의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법상으로는 CRT의 경우 재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restricted securities, exchange funds,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파트너쉽지분, LLC나 C-corporations, 미술품 기타 다른 동산 등에 대해서 설립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금전 이외에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국채나 지방채 등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조세회피 방지, 행정부담 등과 기부활성화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례 2(Charitable Lead Trust를 이용한 개인의 다양한 계획기부 목표 충족) 및 사례 3(Charitable Lead Trust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민간재단 설립)

사례 1) 및 사례 2), 3)에서 소개된 CLT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입법 개선이 있지 않은 한 도입이 어렵다. 그것은 첫째 미국법상 CLT 자체는 면세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신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우리 법제, 특히 신탁법 제35조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과 거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CRT와 달리 CLT의 운용소득 자체는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덜 주어도 되므로 이 점에서는 CRT보다 상대적으로 도입상 유리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신탁의 종료와 관계된다. 신탁이 종료되면 “그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는 규정(신탁법 제72조)에 따라 기부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선선행신탁(CLТ)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신탁법상 수탁자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신탁법 제41조)도,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CRT의 5% 범위 내의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CLT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 수탁자로 하여금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

번째, CLT 설립자가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 미국법상으로는 CLT 설립자가 미리 상속 예상가액으로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세 부담이 없는데, 그것은 미국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법상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미국법에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도 CLT 설립 시점에서 상속인이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 미국처럼 나중에 재산이 이전될 때 조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산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추후의 행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처럼 조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4. 개정 신탁법 및 공익신탁법안에 따른 적용가능성 검토

##### (1) 개정 신탁법에 따른 검토

2011. 6. 29. 신탁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 7.26.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0)</sup>

##### 가. 신탁의 정의(안 제2조)

소극재산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업, 저작재산권 일부, 담보권도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며, 신탁 재산 관리, 처분행위에 “운용” 및 “개발”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신탁재산의 범위 및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행위의 종류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해소함.

##### 나.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

110)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주요 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였음

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다.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라.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안 제59조 및 제60조)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다른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신탁이 상속재산 관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마.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및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안 제62조 및 제63조)

1)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인 수익채권에 우선하도록 하여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우열관계를 분명히 함.

2)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도록 하며, 수익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수익자가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것을 안 때로 하고,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함.

바.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 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 사. 신탁사채(안 제87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이면서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사채에 대해서는 「상법」의 사채발행규정 중 수탁자 이사회의 결의와 사채총액제한제도를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함.

#### 아.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안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신탁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의 경우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계획서의 승인절차, 공고, 채권자보호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요구에 신탁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자.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종료등기·합병등기·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전면 개정된 신탁법 개정안 중에서 계획기부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안 제59조)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신탁이다. 다음은 보도자료에서 소개된 사례이다.

<사례> 이복이 고향인 가수 장기부씨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여 부동산, 주식, 저작권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산 중 1/4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 1/4은 어머니에게, 1/4은 자신의 자선재단에, 나머지 1/4은 통일이 될 경우 이복에 두고 온 막내 동생의 후손에게 귀속시키고 싶습니다. 장기부씨는 고문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개정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민법상 유언 및 상속의 법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상속제도, 특히 유류분과의 충돌가능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유류분과 충돌하는 경우의 효력, 침해되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sup>111)</sup>

수익자연속신탁제도(안 60조)는,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되, 자신의 사후에는 부인을 수익자로, 부인의 사후에는 다시 자녀를 연속하여 수익자로 하는 유형의 신탁인데, 이에 따라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라고 보도되었다.<sup>112)</sup> 다음

111) 서울지방변호사회 입장

112)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신탁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 신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50년만에 개정된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하거나 상속재산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유언대용신탁은 예컨대 재산을 보유한 A씨(위탁자)가 은행이나 변호사, 신탁회사 등 B씨(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은 후 자신이 정한대로 재산을 나눠달라고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는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유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자 연속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은 그에 대한 사례이다.

▶자수성가한 용났네씨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유산 중 일부로 자신이 졸업한 ‘두메산골’ 초등학교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들에게 임종 후 100년 동안 매년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났네씨는 고문변호사의 조언으로 매년 ‘두메산골’ 초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자를 차례대로 수익자로 지정한 개정 신탁법 상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과거 자신에게 대학 입학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었던 어느 이름 없는 독지가에 대한 보은의 한을 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을 순차로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마치 가족재단(Family foundation)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쨌든 유연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 신탁법상으로는 CRT나 CLT와 같은 형식의 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신탁법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한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부에 있게 되는데, 세제 혜택과 관련된 입법은 일단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되어야 입법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공익신탁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최근 공익신탁법안의 제정안이 마련되어 법제처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도입되는 등 신탁 법률관계에 변경이 있어 이를 공익신탁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주무관청 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공익신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되는 “공익신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 되,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공익신탁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공익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신탁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공익”의 판단기준을 법무부 내의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同 법안 제7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사업계획서 및 신

---

신탁을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녀 등이 아닌 사회 환원이나 기부 등의 의사가 있을 때 신탁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선정할 수 있어 분쟁을 막고 기부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38405> : 최종접속 2011.7.26.)

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6호에서 신탁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신탁의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경우[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투기적 거래, 고리의 대부 그 밖에 공익신탁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신탁재산 운용에 관하여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마.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하여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6.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에 의해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취지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CRT나 CLT에 의해서 위탁자나 수탁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 등에 대해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명문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호 가목에 의하면 신탁행위의 종료시에 잔여재산이 공익단체로 귀속되는 CRT는 가능하지만 잔여재산이 위탁자나 상속인 등에 귀속되는 CLT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탁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던 것을, 공익신탁법안에서 오히려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한 결과가 되었다. 고령화시대의 법제는 청장년시대를 가정한 종래의 법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부조와 기부를 적절히 결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CRT와 CLT와 같은 형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법의 그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공익신탁법안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요약 및 결론

고령화시대는 종래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료비용, 독거노인의 문제 등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고령자가 사회의 다수자가 되어 다수결 원리에 따르면 고령자의 의사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기부금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세대들 또는 그 후손들 중에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한데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안되거나 기부로 인한 가족들간의 분쟁 등 여러 사유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기부를 연결하는 제도로써 미국의 계획기부 상품의 종류, 규모, 현황 등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CRT와 CLT에 대한 소개 및 법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CRT나 CLT를 활용하여 어떻게 기부를 하는가에 대한 미국 사례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그 사례가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미국 사례를 보면 유용한 점이 있으나 현행 법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CRT나 CLT를 도입할 것인가, 둘째 어떤 형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즉 미국식 그대로 도입할 것인가 수정하여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합의에 따른 문장 작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 동의를 얻도록 홍보와 설득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CRT나 CLT는 “부자들을 위한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으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큰 관점에서 보면 일부 사적인 이익을 눈감아주고 더 큰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이전하므로, 즉 재산이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공적(公的)인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득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종전 연구 중에는 주로 세제 측면에서 자산잔여신탁과 공익연금형 기부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 등에 기부자의 연령, 기부자산, 기부금액, 기부자 및 기타 수익자가 받는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있다.<sup>113)</sup>

미국식의 CRT나 CLT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입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민법상 유류분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입법규

113) 이진오/임규진/황보은,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연구개발사업 2007-지정-위탁 22), 2007. 8, pp59-71

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는 상속인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자유롭게 CRT나 CLT를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도 변호사단체에서 유류분과의 관계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부분은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유언신탁이 아닌 경우로서 사망 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와 같은 형식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CRT나 CLT를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의 공익신탁법안 또는 신탁법의 개정이다.

①공익신탁법안 제7조 5항 가목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신탁의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무조건 공익신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 총 재산가액의 5% 이내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②7조 6항 가목의 경우에도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에 의해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잔여재산이 기부자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단서를 신설하여 “단 신탁약정서에 자선선행신탁(CLT)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③신탁법 규정 중 신탁의 종료 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도록 한 신탁법 제72조의 경우에도 ②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세법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①이른바 사회환원기부신탁을 규정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어 존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위탁자와 기부되는 공익법인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사회환원기부신탁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제80조 1항 3호 다목의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단서에 “복수의 공익법인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②시행령 제80조 1항 3호 라목의 경우 금전으로 신탁한 경우에만 사회환원기부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재산으로 신탁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평가의 용이성이나 비용, 세법상 담보제공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상장주식 또는 회사채나 국채 등의 유가증권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어떨부분생각한다. 이 경우 “금전,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또는 회사채나 국채 등으로 신탁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특수관계인에게 수익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무조건 추정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제 16조 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신탁으로부터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④소득세법 제39조 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법 제34조의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을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귀속은 그 신탁에 재산이 이전된 때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들은 CRT나 CLT를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도 기부잔여신탁(CRT)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또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3호에 유사한 규정이 입법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CRT 도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입법안 중 위탁자나 상속인 등에게 5% 수익을 주는 부분에 대한 공익신탁배제 규정들에 대한 입법 작업(공익신탁법 제7조 5항 가목,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제16조 3항, 기부금의 귀속연도를 공익신탁으로 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별개의 항을 신설하는 것, 공익신탁 대상 재산을 부동산과 상장주식, 채권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3호 라목)만으로 가 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의 규정들은 CLT를 도입하는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인데, 미국법상으로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IRS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CRT나 CIF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김우재(2009), 『국내외 프라이빗 बैं킹 분석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김진, 원종학 (2006), 『상속·증여세제의 경제적 효과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보험개발원 (2004), “보험회사의 부유층 자산관리 사업필요성 및 시사점,” 『계간 보험동향』, 제 29호, 봄호

보험개발원(2006), “해외보험동향,” 『계간 보험동향』, 여름호

신문식•이경희(2004), 부유층 자산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이상신·박훈(2010),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아름다운재단 연구보고서

이전오/임규진/황보은(2007),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연구개발사업 2007-지정-위탁 22)

이태로/한만수(2011), 『조세법강의』(신정7판), 박영사

재경위 (2005), “국내 12개 은행의 프라이빙뱅크 대상 고객현황”, 『재경위 국감자료』

정창률(2010), “연금체제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소득 보장 체계”,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2호

최준욱/전병목(2004),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평균연령』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하나금융경제연구소(2006), 자산관리서비스시장 발전에 대한 대응방안, 『금융연구』

홍유석(1999), 「신탁법」(전정판), 법문사

## 영문자료

Jarrell, Sherry, Garst Reese and Gary L. Shoesmith (2006), "What Will U.S. Consumer Spending Pattern Look Like in 2020 and 2025?"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Spring.

Barrett, D. R and M. E. Ware(2002), 『Planned Giving Essentials: A Step-by-Step Guide to Success』, p.5.

Burtless, Gary (2006), "Social Norms, Rules of Thumb, and Retirement: Evidence for Rationality in Retirement Planning," 『Social Structures, Aging, and Self-Regulation in the Elderly』, Springer, pp.123-160

Burtless, Gary (2010), "Do Workers Prepare Rationally for Retirement?," 『The Aging Consumer』, Routledge, p.109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y Survey, April, 2008

Global Private Banking(2003), 『Wealth Management Survey 2003』, Pricewaterhouse Coopers

Hurd, Michael D. and Susanna Rohwedder (2010), "Spending Patterns of the Older Population," 『The Aging Consumer』, Routledge, p.25~49

LIMRA International (2003), Finances of the Affluent

Lisa Schreiber, 『Split-Interest Trusts, Filing Year 2007』

Lucy Bernholz (2004), 『Creating Philanthropic Capital Markets; The Deliberate Evolution』, John Wiley & Sons, Inc.

Lusardi, A. and Beeler, J. (2007), "Explaining Savings Behavior Between Cohorts: The Role of Planning," 『Redefining Retirement :How Will Boomers Fare?』, Oxford University Press.

Ray, Thomas Jr (2007), 『Charitable Gift Planning— A Practical Guide for the Estate Planner』, Probate and Trust Law, p.xx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 저/임채웅 역(2011), 『미국신탁법』, 박영사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2004)

川口幸彦(2008), 「信託法改正と相續税・贈與税の諸問題」, 税大論叢57號

## 인터넷 자료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hb6589/is\\_1\\_13/ai\\_n29166816/](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hb6589/is_1_13/ai_n291668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579>

<http://www.nia.nih.go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927424>

<http://www.blueprintrd.com/text/highlights.pdf>

<http://www2s.biglobe.ne.jp/~yshr-mat/newpage22.htm>

<http://www2s.biglobe.ne.jp/~yshr-mat/newpage22.htm>

<http://EzineArticles.com/4595315>

<http://www.law.tohoku.ac.jp/~parenoir/shintakuhou-kaisei.html>

<http://woman21.org/view.php?id=free&no=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38405>